

자료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국내언론관계판결
외국언론관계판결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법제관련문헌

PAC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당사자의 신원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수술장비 절도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경찰에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2부산조정22, 23 (병합) 각 손배청구

신청인 : 이○○

피신청인 : (주)국제신문

중재부 : 부산중재부

종결일 : 2012. 9.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250만원)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구속된 아버지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수술장비를 절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범행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에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없고 사전구속영장 또한 신청되지 않았으며 자신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마치 혐의를 인정한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5십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국제신문 : 「빛나간 효심 아들,父공탁금 마련하려 절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3일자 사회면 6면)

내용 :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휴업 중인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훔친 이모(27)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께 사하구 한 병원에 들어가 엑스레이 촬영기기 등 수술장비 8종류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병원을 운영하던 자신의 아버지(51)가 건강보험공단 급여 67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되자 법원에 낼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250만원)

〈합의내용〉

1. 피신청인은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본 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후 사업실패사례 보도에 불필요하게 신청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브랜드를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1345 · 1346, 1347 · 1348(병합)

각 반론 · 손해청구

신청인 : (주)서린푸드시스템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종결일 : 2012. 10. 5.

처리결과 : PR보도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 후 살아가는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에 실패한 남성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업체의 브랜드를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례에 소개된 남성의 사업 실패와 보도내용은 신청인의 업체와 무관한데 수차례 브랜드를 노출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됐으며 반론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PR보도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MBC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7백만 베이비부머..제2의 삶은?”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2일 21:00)

내용 : [앵커] 오늘 뉴스플러스는 베이비부머, 그러니까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고민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무려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경제부 기자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애환을 듣고 제2의 인생 성공의 열쇠를 찾아봤습니다.

[기자1]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50세부터 58세 국민이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모두 7백만 명 정도로, 바로 평범한 우리 아버지들이 해당됩니다.

한달에 평균 303만원을 벌지만 자녀 교육비 등에 220만원을 쓰고 있어서 노후를 위해 저축하기는 빠듯합니다.

모아놓은 재산은 부동산을 포함해 평균 3억2600만원 뿐인데 이 돈을 밑천으로 자녀 결혼도 시키고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부터 이들의 집단 퇴직이 시작됐고, 앞으로 매년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남은 30년의 출발선에 섭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베이비부머들을 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중략)

[기자1] 베이비부머들이 노년에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생활하려면 월 225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자녀 결혼 비용을 빼고도 노후자금으로 5억4천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퇴직금으로 가게라도 해볼까 생각하게 되지만, 베이비부머들이 주로 뛰어드는 숙박업소, 음식점의 경우 열 곳 중 여섯 곳이 3년 안에 망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재취업도 녹록치 않은데 이 험난한 현실을 뚫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2] 닭이 차 있어야 할 냉장고가 텅 비었습니다.

하루 5마리 팔기도 힘들다 보니 치킨집을 연 지 1년 5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61년생 베이비부머 정○○ 씨에게는 벌써 두 번째 창업 실패.

10년 전 중견 무역업체를 그만두고 PC방을 열었지만 실패, 다시 치킨 프랜차이즈에 도전한 결과 빚만 1억원 쌓였습니다.

[정○○] “애 교육비 많이 들어가죠. 걱정이죠 뭐 앞으로...내가 원래 빚 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퇴직금을 투자해 창업에 뛰어들기 쉽지만 준비가 부족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 대기업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아이템을 정하는 것부터 가게 운영 방법까지 초보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가르칩니다.

석 달 짜리 과정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직원도 많습니다.

(후략)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MBC-TV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반론보도문〉

가. 제 목 : ‘치킨프랜차이즈에 도전한 결과 빚만 1억 쌓였습니다’란 보도를 하면서 사용한 배경화면인 ‘치킨히어로’ 브랜드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12일 9시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7백만 베이비부머..제2이 삶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정○○씨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치킨프랜차이즈에 도전한 결과 빚만 1억 쌓였습니다”란 보도를 하면서 ‘치킨히어로’ 브랜드를 수차례 노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출된 ‘치킨히어로’ 브랜드와 관련하여, 해당 가맹사업자는 보도내용과 ‘치킨히어로’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 PR보도

〈합의내용〉

1. 피신청인 (주)문화방송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 신청인 (주)서린푸드시스템에 관련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뉴스를 제작하여 방송한다.

• 뉴스의 주 내용 : 창업아이템 관련 사례 또는 프랜차이즈 관련 긍정적인 보도로 소개

• 브랜드(치킨히어로) 노출 : 15초 전후

2. 피신청인 (주)아이엠비씨는 (주)문화방송이 위 1항

을 이행한 후 2일 이내에, 이행한 보도내용을 아이엠비씨(<http://imnews.imbc.com>)에 게재하고,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법원에서 무혐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과거 사건에 대해 마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2서울중재43
 신청인 : 문정수
 피신청인 : (주)조선뉴스프레스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결정일 : 2012. 10. 15.
 처리결과 : 중재결정 (정정보도)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1997년에 발생했던 한보건설의 뇌물살포사건에 관해 설명하면서 신청인이 뇌물 사전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수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당사자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절차에 따라 중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중재결정했다.

■ 중재대상보도

월간조선 : 「국민검사 심재륜의 수사일지⑨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김현철 사건③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태수)」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일자 382면)

내용 : 한보 ‘정치인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로 국민의 눈길이 연일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에 쏠리던 1997년 4월 16일, 아침 일찍 김찬진(金贊鎭)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장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내게는 대학 및 검찰 선배인 그는 일찍이 검사 시절 능력을 인정받아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긴 경력의 인물이다. 그 무렵엔 여당인 신한국당의 전국구 승계후보 상위 순위에 올라 있기도 했다.

(중략)

“소환대상자 안 만난다”

내가 그토록 보안에 신경을 썼던 이유는, 수사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것은 반드시 외압을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정치인 한 사람을 수사한대도 모쳐 혹은 도처에서 ‘연락’이 오게 마련이다. 하물며 30여 명의 정치인을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하는데 외압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전화로 직접, 신문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지인을 통해, 기자를 통해, 검찰 내부인사를 통해 등등, 그 경로도 다양하다. 그러나 누가 됐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든 나는 외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하려 했다.

당장 검찰에 소환되는 인사들과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았다. 정당의 고위인사, 대통령 측근, 정치권 실세 등 거물급 인사들은 그 지위나 ‘얼굴’ 자체가 외압이 될 수 있다. 나와 평소 친분이 있던 법조계 출신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아예 그들과 대면

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거물 정치인들이 검찰에 들어오기 전 그들을 대신 한 몇몇 변호사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 와 “누구누구는 심 부장의 앞날에도 크게 도움이 될 터이니 친분도 좀 쌓아 둘 겸 중수부장실에서 먼저 면담하고 차라도 한 잔 하는 등 예우를 갖춰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부탁마저도 분명히 거절했다. 그런 전화가 몇 차례 있고 나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소환 대상자는 예외 없이 검찰청사 현관에서 조사실로 곧 바로 모실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이 맡겨 준 지금 중수부장이 검사의 끝’이라 믿던 나는 ‘앞날’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다.

심지어 내가 모시던 검찰총장 그리고 나와 절친한 검사 동기가 인간적인 부탁을 했을 때도 나는 외압 차단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정치인 수사 과정에 문정수(文正秀) 부산시장이 지역개발 건과 관련해 2억원대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다. 돈을 받던 당시 문 시장은 부산시장에 취임하기 전이었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먼저 돈을 받고 나서 실제 당선 및 취임 이후 한보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었다. 즉 사전수뢰(事前收賄)에 해당한다. 게다가 그때는 마침 부산에서 중대한 국제 체육행사인 동아시아대회가 개최되기 직전이기도 했다. 이래저래 문 시장에 대해서는 불구속할 만한 배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배경으로 먼저 김진세(金鎭世) 부산지검장이 “부산 사람들의 현지 의견”이라면서 불구속 이야기를 전해 왔다. 사법시험 동기의 부탁이었지만 나는 “액수로 보나 죄질로 보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거꾸로 그를 설득했다. 문 시장과 절친한 김 총장도 내게 대놓고 불구속 의견을 냈다.

“심 부장, 문시장하고 내가 고등학교 동기인 거 알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 동기라는 것도?”

—예,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도...(구속할 거냐?)”

거듭 묻는 김 총장에게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물론 길으로야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 그 미안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문 시장은 결국 불구속기소 됐다.

(후략)

■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월간조선 11월호의 “국민검사 심재륜의 수사일지” 첫 면(연재가 없을 경우에는 목차 첫 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월간조선 9월호의 “국민검사 심재륜의 수사일지⑨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김현철 사건③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태수)”의 제목 중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태수)”와 같은 크기로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아래의 정정보도문 본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정정보도문〉

1. 제 목 : “문정수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월간 조선은 지난 9월호의 “국민검사 심재륜의 수사일지” 기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태수)”라는 제목하에 “정치인 수사 과정에 문정수 부산시장이 지역개발건과 관련해 2억원대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다. (중략) 먼저 돈을 받고 나서 실제 당선 및 취임 이후 한보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었다. 즉 사전수뢰에 해당했다. (후략)”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수 전 부산시장의 위 사건에 관한 법원

의 판결(서울지법 97고합436, 서울고법98노193, 대법원 99도 2569)에 따르면 문정수 전 부산시장은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한보건설에 특혜를 준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3심 모두 무죄판결이 났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 처리결과 : 중재결정 (정정보도)

〈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의 목차에 [별지1] 정정보도문의 제목(문정수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을 []안에 표시해 게시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300페이지~400페이지 사이에 [별지1]의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김현철 사건”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크기와 같게 한다.

[별지1]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문정수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월간조선은 지난 9월호 ‘국민검사 심재륜의 수사일지’ 기사에서 “정치인 수사과정에 문정수 부산시장이 지역개발건과 관련해 한보건설로부터 2억 원대를 뇌물을 수수해 사전수뢰에 해당돼 불구속수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대법원은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한보건설에 특혜를 준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의 화랑이 과거 정치인 친척의 도움으로 급부상했고 현재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1485 · 1486, 1487 · 1488(병합)

각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 (주)박○○화랑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종결일 : 2012. 10.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기사삭제 및 100만원)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조간신문의 주요기사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기 실세 정치인들의 친인척 화랑들이 입지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활발한 경영활동 중인 화랑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없이 친척관계인 정치인을 연관하여 언급하며 신청인의 사업장이 마치 정치적인 배경으로 둘러싸여 경영위기를 맞은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MBC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아침신문보기] 술병 수천 개 널린 경포 백사장…취객들은 밤바다 뛰어 들어 外”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2일 06:00)

내 용 : [앵커] 이번에는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강릉 경포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경포해수욕장에서의 음주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젊은 층들이 저녁 8시쯤부터 백사장에서 술판을 벌이면서, 음주에 따른 폭력과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매년 휴가철마다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소주병 등 쓰레기들로 해수욕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내일 경포해수욕장 개장 때부터 해수욕장의 술 반입과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기 실세 3인방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진 전 의원은 공통점은 가족이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것이라는데요.

정 의원의 부인 이화익 씨와 박 전 수석의 부인 조현 씨, 박 전 의원의 사촌누나 박○○ 씨 모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화랑의 대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 정치인들의 입지가 위기에 처하면서 세 갤러리의 위상도 추락하는 모양새라는데요.

박 전 수석의 부인이 운영하는 ‘조현화랑’은 한때 급부상했지만, 최근 경영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박 전 의원의 사촌누나가 대표로 있는 ‘박○○화랑’도 부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제작년 8월, 서울에서 CNG 압축천연가스 버스가 폭발해서 승객과 행인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

데요.

하지만 아직도 폐차 지정인 버스 수백 대가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수명 9년을 초과한 CNG 버스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천7백여 대에 달한다는데요.

이 가운데 2,003대는 폐차 처리됐고, 72대는 재검사를 통해 수명이 연장됐지만, 나머지 671대는 별다른 조치 없이 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정확히 몇 대가 운행 중인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시한폭탄이 방치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략)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MBC-TV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박○○ 화랑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2일 “失勢 3인방 ‘가족 갤러리 동반위기’라는 제목으로 박○○ 화랑이 친족관계인 정치인과 연계하여 현재 부도위기에 처해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 인터뷰 및 취재 없이 화랑이 부도위기는 보도를 함에 따라 현재 국내외 아트페어 참가 및 기획 전시를 바탕으로 활발한 경영활동에 임하는 박

여속 화랑에 대한 보도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7월 12일자 보도 내용에 언급된 정치인과는 화랑 수익에 대한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정정 보도 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기사삭제 및 100만원)

〈합의내용〉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주식회사 아이엠비씨는 서로 연대하여 2012년 11월 14일까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일백만원(1,000,000원)을 계좌이체(○○은행, ○○○○○○-○○-○○○○○○ 예금주(주)박○○화랑)를 통해 지급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엠비씨는 피신청인의 조정대상기사(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095117_5782.html) 중 신청인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DB에 저장된 조정대상기사의 다시보기 동영상 중 신청인과 관련한 내용을 편집·삭제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국민일보가 신청인 관련 전사회 보도를 하면 그 보도가 있는 당일 아침 뉴스투데이 [아침신문보기]에서 국민일보의 신청인 관련 전사회 기사를 소개하도록 한다.

4. 피신청인들이 제1~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보도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피신청인들이 제1~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알루미늄 호일의 문제점을 다루는 보도의 취지와 목적을 속이고 사업장을 취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1507

신청인 : 신○○

피신청인 : (주)매일방송

중재부 : 서울제8중재부

종결일 : 2012. 11. 5.

처리결과 : 조정성립 (200만원)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알루미늄 호일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청인의 인터뷰와 회사 전경 영상을 함께 내보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알루미늄 호일의 생산업체 대표로서 생산과정 소개라는 설명을 듣고 촬영에 응했는데 보도 취지와 목적이 달라 회사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MBN : 「생활의 재발견」 프로그램 “알루미늄 호일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일 23:00)

내용 : [자막] ‘○’종합금속

[기자] 그렇다면 알루미늄 호일은 언제 처음 어떤 용도로 만들어 진 것일까?

[자막] 알루미늄 호일

1910년 J.G. 네어&선즈사(社)가 스위스에 위치한 호일 압연 공장에서 최초개발

[기자] 1910년 스위스에 한 압연 공장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자막] 초기에는 담배와 과자 포장지로 사용되다가 1940년대 한 호일 제조사 영업이사가 추수 감사절 칠면조 포장에 호일을 사용하며 미국전역의 가정에 보급됨

신○○ [대표이사/‘ㅇ’종합금속]

[신○○] 저희 사업장에서는 15m 기준으로 (하루) 평균 1만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자] 공기와 빛을 차단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뛰어난 알루미늄 호일

[자막] 차단성이 높아 박테리아 성장 억제에 효과가 뛰어난 호일

[기자] 그런데 알루미늄이 문제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200만원)

〈합의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년 11월 9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해당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영상 중 신청인을 알 수 있는 부분(초상, 회사주소, 성명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다.

국내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 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판례 1]

판 결

심층취재 보도프로그램은 신속보도 필요성이 낮아 의혹 수준의 사실을 신빙성이 부족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보도했다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신속성이 요구되는 뉴스 속보의 경우에는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진실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은 보도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더 클 때가 많은 반면,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심층취재 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와 달리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진실 여부를 규명할 시간적 여유나 수단도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에 단지 의혹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일방의 진술이나 신빙성 없는 자료에만 의존하여 쉽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건 : 2011가합14797 손해배상

원고 : 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피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론종결 : 2012. 8. 31.

판결선고 : 2012.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2.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의 방송 첫 머리 화면 상단에 24급 크기의 고딕활자로 “정정방송”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 제목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방송문을 18급 크기의 명조활자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

금 위 정정방송문을 원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1회 낭독하게 하여야 하고,

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주소 <http://www.imbc.com>의 '생방송 오늘 아침' 해당 페이지에 위 가.항 기재 크기 및 종류의 활자로 별지 1 정정방송문을 함께 게시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2 기재 내용을 피고가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08:30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의 도입부에 제목은 24급 고딕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방송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IMBC)의 위 프로그램 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로 게시하고, 원고에게 489,995,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위치한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을 구별하여 지칭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통틀어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건물 및 그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유치원을 각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다.

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둘러싼 원고와 학부모들 사이의 갈등 발생

(1) 이 사건 유치원에 아들 김○○를 등원시키고 있었던 김○○은 김○○가 유치원을 다녀온 후 복통을 호소하자 2011. 1. 13. 유치원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표○○과 함께 조리실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자재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통기한¹⁾이 지난 김, 전분, 생률 등의 식자재(이하 '이 사건 식자재'라고 한다)를 위 냉장고에서 발견하였다.

(2) 위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유치원에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있었던 학부모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식자재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11. 2. 21. 1차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표○○을 제외한 일부 재직 교사와 조리사 백○○가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3) 위 1차 간담회 후 원고는 2011. 2. 22. 학부모들에게 '최근 유통기한이 넘은 식자재가 냉장고 안에 있었고, 그 중 소량의 생크림이 간식시간에 빵과 함께 나왔으며, 유통기한이 넘은 감자가루를 이용하여 조리한 사실도 있었다. 조리실 안전 점검이 부실했던 원고의 과실을 깊이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다. 다시는 이

1) 김 2010. 12. 21.까지, 진공 포장된 생률 2010. 10. 16.까지, 전분 2010. 1. 11.까지, 쇠고기 스프 2010. 12. 30.까지, 용기 포장된 생률 2009. 3. 31.까지 등

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원장인 원고는 위 사실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취지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다음날 유치원 7세 반 졸업식 행사 도중 위 가정통신문과는 달리 이 사건 식자재를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4) 이에 학부모 대표 김○○는 2011. 2. 24. 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가 여전히 원장직 사퇴 등 학부모들 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자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지원청과 화성시청에 이 사건 유치원을 폐원하고 원고의 보육교육 관련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민원 등을 제기하였으며, YTN과 피고 등 언론매체에 이 사건 식자재를 발견한 사건 등을 제보하였다.

(5) 이에 따라 2011. 2. 25. YTN 뉴스에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사건을 보도하기에 이르렀고, 다수의 언론매체도 그 무렵 위 보도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인터넷뉴스를 게시하였다.

다. ‘생방송 오늘 아침’ 제작진의 취재 및 방송

(1) 학부모 대표 김○○의 제보를 받은 피고의 ‘생방송 오늘 아침’ 제작진(이하 ‘이 사건 제작진’이라 한다)은 2011. 2. 27. 김○○의 자택에서 학부모들을 만나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한 취재를 시작하면서, 김○○가 자신의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식자재와 원생들의 진단서, 원고가 보낸 가정통신문 등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28.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여 원고, 표○○, 퇴직교사 등을 취재하였으며, 같은 날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를 취재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2011. 3. 1. 08:30경부터 ‘생방송 오늘 아침’ -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밥상에? 수상한 유치원”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약 15분 50초 동안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대본은 별지 4 기재와 같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전 토크 부분 : 엠씨 최윤영이 유아대상 어학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발견되었던 것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리포터 김승주가 경기도의 한 유치원에서 무려 유통기한이 2년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파문이 일었고 이에 해당 유치원을 밀착 취재하였다고 밝히는 장면.

(나) 학부모들에 대한 취재 부분 :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와 아이들에 대한 진단서를 보여주고, 학부모들이 유치원 냉장고를 열어보게 된 계기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장염 등 유사한 병명의 질환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장면.

(다) 유치원 측에 대한 취재 부분 : ① 유치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찾아 갔으나 원장인 원고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다른 유치원 관계자는 피하기만 하였다는 설명에 이어, ‘나가세요’,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연이어 배치한 장면. ② 학부모들이 위 유치원 관계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위 유치원 관계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아이들의 생명을 제 생명처럼 생각한다’라고 답변하는 장면. ③ 곧이어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퇴직교사로부터 전혀 다른 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퇴직교사가 ‘식단에 대하여 몇 번 이야기를 하였고, 원장 등은 따로 음식을 해 먹으며 음식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는 장면.

(라) 반찬 없는 급식 문제에 대한 취재 부분 : ① 불량 식자재 뿐 아니라 학부모들을 분노케 한 또 다른 문제는 반찬 없는 급식 사진이라는 설명에 이어 아이들

의 식판 사진을 비추고 엠씨 신동호가 ‘땀밥을 먹었다는 건가요?’라고 말하는 장면. ② 퇴직교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장면에 이어 퇴직교사가 이야기하는 부실 급식의 실태는 심각했다는 설명과 함께 퇴직교사의 ‘자장밥이 나오는 경우 야쿠르트나 단무지 정도만 주고 반찬은 따로 없었다. 일주일에 거의 그런 식단이 제공된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방송되는 도중에, 엠씨 신동호가 ‘이 건 뭐 포로수용소도 아니고’라고, 리포터 김승주가 ‘충격적이죠’라고 말하는 장면.

(마) 난방 문제에 대한 취재 부분 : 교사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 또 다른 문제점도 드러났다는 설명과 함께 퇴직 교사가 ‘매우 추웠다. 보일러는 항상 절약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10시 반이면 보일러를 꺼야 한다. 원장이 보일러 끄라고 방송을 한다. 몰래 보일러를 켤 때도 있으나 원장이 있으면 돌아다니기 때문에 켤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는 장면.

(바) 원고에 대한 취재 부분 : ① 직접 음식을 만든 조리사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는 유치원을 떠난 상태라는 설명 후 학부모들의 격앙된 반응을 연이어 배치하고 ‘더 가슴이 미어지는 건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불량 식자재 사용을 인정하는 듯 했던 유치원 측의 태도 변화입니다.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요’라고 말하는 장면. ② 이어 대표자로서의 입장을 묻는 이 사건 제작진의 질문에 원고가 ‘지쳐 가지고 그냥 아무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 문을 닫는다.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다. 지금 너무 떠들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뭐가 미안한 건데? 그러니까 미안한 이유를... 그냥 미안합니다 이건 아니죠’, ‘먹이지 않았거든요?’라고 답변하자, 리포터 김승주가 ‘먹이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죠 계속해서’라고 말하는 장면.

(사)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한 취재 부분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내 학부모에게 사과하면서 해당 유치원의 원장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는 장면.

(아) 후 토크 부분 : ① 엠씨 신동호가 ‘폐기해야 마땅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여 놓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아이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제재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리포터 김승주가 ‘진상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행정조치만 취할 수 있다. 관계당국의 소홀한 관리도 문제인데 아이들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장면. ②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쓴 것을 보니 조리 위생상태도 불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복통이나 설사 같은 가벼운 증상 뿐 아니라 뇌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

라. 이 사건 방송 이후의 정황

(1) 화성시장은 2011. 2. 28.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 보관한 점을 위반 사항으로 하여 3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고, 화성서부경찰서에 이 사건 유치원 종사자의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2) 또한 학부모 대표 김○○ 등은 화성시청의 위수사의뢰와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화성서부경찰서에 제기하였고, 김○○ 등의 진정 및 화성시청의 수사의뢰에 대하여 화성서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후 원생들에게 급식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모두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위 내사 과정에서 조리사 백○○가 원고에게 법률적으로 자문한 결과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며 출

석을 거부하여 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3) 한편 경기도 교육청장은 2011. 3. 21. 타인이 이 사건 유치원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소하였다.

(4) 이 사건 식자재 등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은 150명가량이었으나 그 후 10명가량으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약 50명의 원생이 위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8, 9, 11, 17 내지 20, 22, 24 내지 29, 31 내지 34, 39, 40, 43, 44호증, 을제1, 3, 5 내지 9, 11 내지 13,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제2, 16호증의 각 영상, 증인 김정숙, 표○○, 김○○, 김○○의 각 증언,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 화성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책임자로 특정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을 타인에게 맡겨 오다 2011. 3. 21.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원장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어린이집은 처음부터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도 아니어서 어느 모로 보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를 유치원 대표자, 이 사건 유치원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유치원이라고 표시하면서 모자이크 처리 및 목소리 변조처리를 하여 원고의 이름과 유치원의 명칭 등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 사이에 이 사건 식자재에 관한 문제가 알려져 학부모 1, 2차 간담회까지 개최되었고, YTN 등 다른 언론매체에서도 위 문제를 보도한 이후였으므로, 위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 중 적어도 위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나 평소 원고를 알고 지내던 주변 사람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유치원 대표자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이 있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상 이 사건 유치원의 대표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작진 역시 원고가 위 유치원의 대표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유치원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

여 원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방송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의 당사자 적격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²⁾의 요지

(1) 이 사건 식자재를 보관, 사용, 급식한 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적시에 폐기하지 못한 불찰로 이 사건 유치원 냉장고에 이 사건 식자재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사용하여 급식을 한 적은 없으므로 유치원생들의 배탈은 이 사건 유치원과는 무관하다. 원고가 선부르게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생크림, 전분의 사용을 인정한 적은 있으나 그 후 백○○로부터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원고의 결백을 알리기 위하여 입장을 변경하였을 뿐 태도를 번복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식자재 중 생물은 발견 당시 진공 포장된 상태로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곰팡이가 필 가능성이 없었고, 곰팡이가 핀 생물을 보관한 적도 없다. 오히려 생물에서 발견된 곰팡이는 학부모들이 이 사건 유치원 냉동실에서 생물을 꺼내어 50일 넘게 들고 다니며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반찬 없는 급식 부분

이 사건 유치원에서는 식단표에 기재된 대로 반찬을 준비하여 유치원생들에게 급식을 하였다. 피고가 반찬 없는 급식이라면서 방송에 사용한 사진은 아이들이 반찬을 가리지 않고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담임교사가 찍어서 유치원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이며, 원고 등 유치원 관계자들이 원생들과는 별도로 식사를 준비하여 먹은 적은 없다.

(3) 겨울철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기록적인 강추위로 이 사건 유치원의 가스보일러 1대가 동파된 적은 있으나 그 대신 전기 난방기 등을 가동하였기 때문에 난방에는 문제가 없었고, 또한 바닥 난방이 가능한 3층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하였으므로 추운 교실에 아이들을 방치한 적은 없다.

(4)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사실들과는 다르게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실제 운영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은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5) 원생수 감소로 인한 손해

또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수가 급감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설립자

2) 원고는 ① 곰팡이가 핀 생물을 보관한 부분, ② 이 사건 식자재의 사용으로 유치원 원생들이 배탈이 났다는 부분, ③ 원고 등 유치원 관계자들이 별도로 준비된 식사를 하였다는 부분, ④ 원고가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조리실에 CCTV를 달아주기로 하였으며, 유치원장에서 물러나기로 하였다가 태도를 바꾸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 주장은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식자재 보관, 사용, 급식 부분 또는 반찬 없는 급식 부분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① 내지 ④항 기재 주장을 이 부분에 포함하여 함께 판단하도록 한다.

부담금을 전입한 후 상환 받지 못한 금액 중 2010년도와 비교한 차액으로, 유치원의 경우는 31,500,000원, 어린이집의 경우는 26,795,079원에 이르며, 이 사건 방송 전 수준으로 원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생수 감소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의 합계는 174,885,237원(= 94,500,000원(31,500,000원 × 3년) + 80,385,237원(26,795,079원 × 3년))이다.

(6) 기타 재산상 손해

또한 이 사건 방송 전 이 사건 유치원이 있는 건물과 토지의 시세는 30억 원 정도였으나 방송 이후 시세가 급락하였고, 위 건물과 토지를 급매로 거래할 경우의 손해액은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데, 이 또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보아야 한다.

(7)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정정보도 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합계 339,885,237원³⁾(= 174,885,237원 + 165,000,000원) 및 정신적 손해 1억 5,000만 원을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금전배상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불완전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기재 정정방송문을 방송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당 프로그램 페이지에 위 정정방송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진실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작진은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

4. 이 사건 방송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반 법리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나아가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

3) 2012.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339,995,237원의 기재는 오키로 보인다.

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제목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밥상에? 수상한 유치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및 구성에 있어 1. 다. (2)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장면을 순차로 방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식사를 원생들에게 급식하고, 원장 등 관계자는 따로 준비된 식사를 먹으면서 원생들에게는 반찬이 없는 맨밥만을 주었으며, 한겨울에도 제대로 난방이 되지 않는 곳에 원생들을 방치하였는데, 책임자인 원고가 태도를 바꿔 부인과 회피로만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과 구성으로 편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까지 감안하여 위와 같은 방송제목,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적어도 강하게 암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에서 ‘이건 뭐 포로

수용소도 아니고’,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유치원 관계자를 비판하거나 전문가의 소견을 밝히는 내용의 의견표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강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5.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반 법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 29 판결 등 참조).

먼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

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도123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의 공익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식자재 등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로서 그 자체로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② 특히 맞벌이 부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유로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부모들로서는 그 시간 동안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오로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매우 예민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식자재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무렵 유아대상 여학원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등을 사용하여 적발되거나, 어린이 보육기관에서 아동을 학대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이에 영유아 보육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었던 점, ④ 이에 따라 이 사건 제작진은 이와 관련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식자재를 보관, 사용, 급식한 부분

이 사건 유치원 조리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전분, 생률 등의 식자재가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2011. 2. 14.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식자재를 발견한 학부모 김○○은 이를 유치원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자신의 과일 가게에 가져와 껏감 냉동고에 보관하였고, 학부모 대표 김○○가 학부모 1차 간담회날인 2011. 2. 21. 이를 넘겨받아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옮겨 바로 사진을 찍은 후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한 사실, 다수의 유치원생들이 이 사건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위장염 또는 대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중 유치원생 최○○, 전○○, 이○○, 이○○은 2010. 12. 22.부터 같은 달 23. 사이 모두 대장염 등 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김○○과 김○○가 위 생물을 옮기고 이 사건 제작진 등에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를 실온에 노출시켰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유치원과 김○○의 가게, 위 가게와 김○○집 사이의 거리, 이후의 보관 방법에 비추어 발견 당시에는 없었던 곰팡이가 위 과정에서 갑자기 번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발견 당시 생물의 유통기한이 75일이나 지난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생물의 보관장소가 유치원 냉장고의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발견 당시 이미 부패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가 김○○으로부터 생물을 건네받아 찍은 사진에도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조리사 백○○는 학부모 1차 간담회 당시 이 사건 식자재 중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이나 지난 전분의 사용을 인정하였고, 백○○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식자재가 발견된 후 최초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④ 이에 원고도 백○○의 위와 같은 자백을 전해 듣고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가정통신문을 전달하였던 점, ⑤ 그 후 백○○가 최초 자백과 달리 위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진술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식자재의 사용을 부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만일 백○○가 정말로 이 사건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와 같은 진실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이 사건 식자재의 사용 여부를 끝내 밝히지 않았던 점, ⑦ 이 사건 식자재의 각 유통기한 및 그 종류와 수량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냉장고 정리를 하지 못한 과실로 이를 방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2010년도 식단표에 의하면 전분이 소스로 사용되는 탕수육® 등이 급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설령 과실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냉장

고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조리과정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자재의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냉장고에 있었으니 안전하거나 유통기한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별생각 없이 그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 사건 식자재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유치원생들에게 급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유치원생들이 배탈을 일으켰을 개연성 역시 충분하므로, 이 부분은 진실에 합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작진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 사건 식자재를 보관, 사용, 급식한 부분을 방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이상 그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반찬 없는 급식 부분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 문제를 보도하기 위한 것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였다는 부분과 반찬이 없는 급식을 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 사건 방송 취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반찬 없는 급식 부분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문제에 부수되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무게를 지닌 별도의 독립된 문제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방송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방송을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진실성 여부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의 문제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생들이 탕수육을 케첩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해 전분으로 소스를 만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유치원생들의 식판에 반찬이 없거나 반찬이 부실하게 제공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은 2009년경 유치원의 담임교사가 식사시간에 아이들을 촬영하여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유치원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인 점, ② 당초 촬영의 목적 및 계기는 아이들이 반찬을 가리지 않고 맛있게 식사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찬이 부실하다는 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위 사진들로부터 반찬 없는 급식을 추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식판에 반찬이 없거나 일부만 남아있는 사진 역시 처음부터 반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최초 사진의 게시 의도대로 아이들이 반찬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서 반찬이 식판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위 사진의 촬영 및 게시 목적에 따라 위 사진이 유치원 인터넷 카페에 게시될 무렵 학부모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던 점, ⑤ 또한 위 인터넷 카페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사진 이외에도 식사 중인 아이들의 사진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식판에 반찬이 없거나 일부만 남아있는 사진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진에 대하여도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⑥ 경험칙상 어느 식당이든 짜장밥이나 카레밥 등의 메뉴가 나갈 때는 짜장이나 카레가 그 자체로 반찬의 역할을 하므로 단무지나 장국 이외의 추가적인 반찬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점, ⑦ 그럼에도 이 사건 제작진은 퇴직교사의 인터뷰 중 위와 같이 반찬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일품 음식인 자장밥과 관련하여 ‘반찬이 따로 없다’라고 한 부분만을 편집하고 부각시켜 방송하였

던 점, ⑧ 이 사건 제작진과 인터뷰를 한 퇴직교사는 ‘식단이 부실하고 자장밥에는 반찬이 따로 없다’는 취지의 진술⁵⁾을 하였을 뿐 반찬 없는 맨밥을 급식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6 내지 10,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반찬 없는 급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반찬 없는 급식과 관련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겨울철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최초 이 사건 방송은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 문제를 취재하기 위한 것이었고 겨울철 난방에 관한 문제는 급식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점으로 보도한 것일 뿐 급식 문제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진실성 여부 역시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치원에 2010. 12.분 전기요금인 362,760원, 가스요금이 1,145,100원, 2011. 1.분 전기요금인 564,600원, 가스요금이 2,235,600원, 2012. 2.분 전기요금인 514,790원, 가스요금이 1,284,700원이 부과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초경 기록적인 혹한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일러가 동파되어 원고가 이에 관한 수리를 요청하였

5) 인터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제11호증).

‘양이 적었고, 음식이 싱거웠다. 아이들 입맛에 맞췄다고 조리를 하신 건데 어른들이 먹기에는 좀 힘들었다. 조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심할 정도는 아니어서 같이 먹었다. 식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있었으나 가정통신문 식단표에 변경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자장밥이 나오면 요구르트나 단무지 정도만 찜다. 가끔 굴이나 이런 식으로, 반찬은 따로 없다. 식단은 많이 부실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은 든다. 몇 번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그런데 저쪽 안에서는 따로 음식을 해먹으니까 간도 맛고 괜찮다고 한다. 음식만 보고서는 솔직히 많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

던 점, ② 위 보일러가 동파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유치원에는 바닥 난방 이외에도 전기난방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위 유치원에 필요한 난방을 하였던 점, ③ 이 기간 동안 원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이 사건 유치원의 실내 온도가 낮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에 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겨울철 난방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이 사건 제작진과 인터뷰를 한 퇴직교사 역시 이 사건 유치원이 따뜻하지 않았을 뿐 덜덜 떨 정도로 춥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⁶⁾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겨울철에 난방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겨울철 난방과 관련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일반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

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들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2) 반찬 없는 급식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진실한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던 반찬 없는 급식 부분(이하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합하여 진실한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허위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작진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급식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식사라는 점을 떠나서,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제공되는 식사이든지 반찬이 없는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비하여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사안은 그 내용이 매우 선정적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를 접한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충격 역시 일반적인 내용의 보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만일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울한 피해 역시 다른 사안에서보다 현저하게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는 방

6) 인터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1호증)

‘많이 추웠다. 보일러는 항상 절약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10시 반이면 꺼야 됐고, 항상 보일러 끄라고 방송을 한다. 아이들 낮잠 시간에 몰래 켜는 있었어도 항상 원장님 계실 때는 켜 수가 없었다. 원장님이 돌아다니시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추워서 덜덜 떨 정도는 아니었다. 춥다는 생각보다는 따뜻한 편은 아니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송사의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고 지속적인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 이와 같이 충격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보도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자칫 방송사가 보도하기 원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하고, 그 반대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애써 눈감아 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대상 내용이 이례적이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그러한 사안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방송사의 지명도나 신뢰성이 높아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방송사로서는 보도되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사안보다 더욱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료들의 신빙성 여부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통의 상식을 가진 자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라도 그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원칙과 기준을 배경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방송 약 1주일 전부터 YTN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 식자재 등의 문제를 보도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이미 속보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식자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YTN 등 다른 매체들과 달리 이 사건 방송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은 속보를 내보내는 뉴스가 아닌 심층취재를 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방송을 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방송할 필요성은 많지 않았던 반면 심층적으로 의혹을 취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위 프로그램을 방송할 필요는 더 많았음에도 이 사건 제작진은 2011. 2. 25. 김○○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같은 달 27.부터 취재를 시작하여 불과 2일 뒤인 2011. 3. 1. 오전 8:30경

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던 점, ④ 학부모들과 퇴직교사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제작진이 이 사건 허위 부분에 관한 의혹을 처음 접하게 되었으나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 또는 퇴직교사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퇴직교사의 증언만이 이 사건 허위부분에 관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언이었던 점, ⑤ 경험칙상 현재 직장에 몸담고 있는 자가 직장에 대한 우호적인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인 진술로 보기 힘든 면이 있는 반면, 퇴직한 자 역시 퇴직 사유에 따라 이전 직장에 대한 상당한 반감과 악의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 그들이 반드시 내부비리를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고발하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점, ⑥ 그럼에도 이 사건 제작진이 퇴직 교사의 퇴직 사유 등 퇴직교사 증언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방송 전에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설령 퇴직 교사의 증언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증언 자체만으로도 퇴직 교사는 자장밥에는 반찬이 따로 안 나왔거나 전체적으로 식단이 부실하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반찬이 없는 급식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⑧ 보도과정에서 표현에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반찬이 없다는 말은 식단이 부실하다는 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이를 단순한 과장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⑨ 학부모와 퇴직 교사에 대한 인터뷰 후 이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물증은 이 사건 제작진이 학부모들을 통하여 확보한 아동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뿐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문제의 사진들은 반찬 없는 급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촬영된 사진이고 그 사진만으로는 원래 처음부터 반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식사를 거의 마친 후여서 반찬이 식판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⑪ 물

론 수사기관과 같은 수사력을 갖지 못한 이 사건 취재진으로서의 의혹의 진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만일 이 사건 제작진이 이 사건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문제가 된 사진을 제시하며 그 출처, 촬영시기 및 동기 등에 관하여 확인한 후 식단표와 대조하여 보기만 하였어도 이 사건 사진이 반찬 없는 급식과는 무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⑫ 이 사건 프로그램의 취재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제작진이 위와 같은 정도의 확인을 거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거나 고도의 취재기술이나 취재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제작진이 식단이 부실했다는 퇴직 교사의 증언 및 출처와 촬영 동기를 알 수 없는 사진을 취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작진이 반찬 없는 급식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겨울철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다음으로 이 사건 방송 중 이 사건 유치원이 겨울철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작진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2)항에서 인정한 ① 내지 ⑥항의 각 사실들에 이어서 앞서 인정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⑦ 겨울철 난방에 관한 보도 부분은 사실상 퇴직 교사의 증언만이 위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는데, 보일러를 끄도록 한 원장의 태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과도한 난방으로 인한 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약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따라서 ⑧ 그러한 행동 자체보

다는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가 더 중요한데, 퇴직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퇴직 교사가 처음에는 ‘많이 추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인터뷰 마지막에서 ‘그런데 아이들이 추워서 덜덜 떨 정도는 아니었다. 춥다는 생각보다는 따뜻한 편은 아니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진술하여 ‘많이 추웠다’는 표현을 ‘따뜻한 편은 아니었다’라고 정정하였던 점, ⑨ 그럼에도 이 사건 제작진은 자신들이 보도하기 원하는 방향으로 퇴직 교사의 인터뷰를 편집하여 퇴직 교사의 마지막 진술은 생략한 채 퇴직 교사가 마지막 진술로 사실상 철회한 것이나 다름없는 ‘많이 추웠다’는 부분만을 부각시켜 마치 이 사건 유치원이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생들이 냉방에서 지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만을 이 사건 방송에서 내보냈던 점, ⑩ 설령 이 사건 제작진이 퇴직 교사의 증언을 이 사건 유치원에서 겨울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작진으로서의 최소한 이 사건 유치원의 난방시설을 확인하여 보던가, 다른 학부모나 원생들을 추가로 취재하여 평소 이 부분과 관련된 원생들의 불만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였던 점, ⑪ 이 사건 제작진으로서 취재 당시에 난방 문제에 관한 퇴직교사의 인터뷰 내용이나 이에 관한 취재 계획을 밝히고 원고로 하여금 난방 문제에 관한 부분을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방송 이전까지 원고에게 난방에 관한 문제를 보도한다고 알리거나 이에 관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작진이 학부모, 퇴직교사를 상대로 취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이 사건 유치원의 겨울철 난방 문제를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은 모두 이 사건 제작진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 없다.

6.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 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은 150명가량이었으나 이 사건 식자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후 원생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50명의 원생만이 이 사건 유치원에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생수의 감소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유치원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위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나 기타 관련자들만이 이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방송 당시는 이미 1, 2차 학부모 간담회가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YTN 뉴스 등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방송 전, 즉 학부모 2차 간담회가 있었던 2011. 2. 24.부터 이미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로부터 집중적인 환불요구가 시작되었던 점, ③ 이 사건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매체의 보도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 내용의 대부분은 이 사건 식자재 등의 보관, 사용, 급식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허위 부분은 이 사건 유치원의 총제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포함되었을 뿐 이 사

건 방송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던 점, ⑤ 따라서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진실한 부분의 방송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수는 급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15 내지 18, 23, 32 내지 35, 40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표○○, 김정숙의 각 증언, 화성오산교육지청에 대한 사실조חק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생수가 급감하였다거나 이 사건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이 사건 허위 부분이 방송되어 위법하게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적절한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인지도나 신뢰도 및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공중파 방송사로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다수의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을 별다른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사건 허위 부분은 그 내용이 보통 사람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시청자들로서는 단순히 부주의함을 넘어 원고를 지극히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위선자로 낙인찍게 될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서는 원고에 대한 이러한 인상을 오랜 기간 동안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이미 학부모 1, 2차 간담회나 YTN 등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 문제가 주변 학부모들 및 일반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방송 내용의 대부분은 이 사건 식자재 등의 보관, 사용, 급식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허위 부분은 이 사건 유치원의 총체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포함되었을 뿐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던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이 아니었더라도 이 사건 방송 이전의 보도나 이 사건 방송 중 나머지 진실한 부분의 방송 내용만으로도 원고의 명예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어서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방송이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제작진이 이 사건 유치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 역시 위 제작진의 취재를 피하려고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이 사건 허위 부분에 대한 해명에 나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에게 유리한 요소로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일인 2011. 3.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7. 정정방송 청구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과 무관하게 그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허위 부분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방송부분에 대하여 정정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방송문의 내용 및 방송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방송이 나간 시간대 및 그 비중, 표현방법과 방송 내용,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언론 보도에서 고려해야 할 공익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정방송의 내용 및 분량과 글자의 크기 및 모양, 방송방법, 방송시기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과 방법의 정정보도를 명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배

판사 박주영

판사 정순열

(별지 1, 2, 3, 4 생략)

[판례 2]

‘기사형 광고’에서 광고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다면 언론사는 보도기사 게재자로서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게재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언론 매체에 게재되는 기사의 저작권은 기사 작성자가 소속하는 언론사가 가지는 반면, 광고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있는데,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의 기사 마지막 부분에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전재-재배포 금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 독자로서는 위 기사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에 의해 작성된 ‘보도기사’라고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 인터랙티브의 기사 마지막에는 작성자가 ‘객원기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 독자들은 ‘객원기자’의 명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쉽지 않고, 이를 언론사의 밖에서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관련 언론사에 송고하는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로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보도기사’의 게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대행업체를 통하여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하이플러스플라자를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업체로 선정하여 하이플러스플라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광고하게 함으로써, 이○○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구매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헤럴드미디어가 게재한 기사에는 다른 피

고들의 기사에서와 같은 ‘1년 이상 또는 다년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기사의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다소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피고가 게재한 기사로 인하여 이○○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범행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피고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과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피고 헤럴드미디어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 결

사건 : 2011가합127350 손해배상

원고 : 임○○ 외 104명 :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피고 : 1.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조○○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대표이사 김○

3.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4.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유○○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

피고 1.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두드림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변론종결 : 2012. 9. 19.

판결선고 : 2012. 10. 10.

주 문

1.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별지 2 피해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2.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과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피해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이하 피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각 인터넷신문인 ‘http://www.ytn.co.kr’, ‘http://news.chosun.com’, ‘http://joongang.co.kr’, ‘http://heraldbiz.com’을 운영하는 언론법인이다.

2) 원고들은 인터넷 쇼핑몰인 ‘하이플러스프라자(www.hiplusplaza.com)’를 통하여 전자제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별지 2 피해내역의 피해일시란 기재와 같이 2011. 6. 28.부터 2011. 7. 16.까지 사이에 위 쇼핑몰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아무런 제품도 배달받지 못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다.

나. 홍보 기사 내용 및 게재경위 등

1)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2011. 5.경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인 ‘하이플러스’¹⁾의 언론홍보대행사인 주식회사 오픈프레스(이하 ‘오픈프레스’라 한다)가 제공한 내용을 2011. 5. 19. 자신들의 인터넷 신문인 ‘http://news.chosun.com’, ‘http://joongang.co.kr’에 각 <국내 대표 네트워크 쇼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 이벤트 풍성>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1 기재 기사(갑 2호증의 3, 4)와 같이 게재

하하였고, 피고 헤럴드미디어 역시 오픈프레스로부터 넘겨받은 내용을 2011. 5. 20. 자신의 인터넷 신문인 ‘http://heraldbiz.com’에 <생활가전 똑똑하게 사는 법, 네트워크 전문 쇼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에 가면 OK>라는 제목으로 별지 3-2 기재 기사(갑 20호증)와 같이 게재하였다.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가 게재한 기사에는 각 기사 마지막에 작성자가 ‘이○○ 객원기자 ○○○○○○○○○@osen.co.kr’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헤럴드미디어가 게재한 기사에는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2) 한편,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2010. 10. 18. 피고 1.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Digital YTN E-biz 브랜드 대상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조참가인에게 E-biz 브랜드 대상업체의 선정 및 운영업무를 대행시켰다. 이에 보조참가인은 2011. 5.경 오픈프레스로부터 ‘디지털와이티엔 2011년 상반기 E-biz 브랜드 대상 선정 신청’을 접수받고,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그 무렵 하이플러스프라자를 ‘E-biz 브랜드 대상’ 업체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2011. 6. 15. 자신의 인터넷 신문인 ‘http://www.ytn.co.kr’의 <비즈니스정보>란에 <E-BIZ 브랜드 대상 인터넷 최저가 가전제품, 하이플러스프라자>라는 제목으로 별지 3-3 기재 기사(갑 2호증의 2)를 게재하였는데, 이는 하이플러스가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고, 기사 마지막에는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기사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이플러스프라자는 국내의 대표적인 온라인 가

1) 2011. 3. 31. ‘김○○’을 대표자로 하여 ‘하이플러스’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 등을 종목으로 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이 이루어졌고(을다 3호증), 이후 2011. 6. 7. ‘이○○’를 대표자로 하여 ‘하이플러스프라자’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종목으로 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이 이루어졌다(갑 11호증).

전쇼핑몰로서 이곳에서 대표적인 가전브랜드들의 제품을 국내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

○ 하이플러스프라자에서 고객들의 단순 변심에 의해 반품된 제품들을 최대 90%까지 할인 판매하는 리퍼브숍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하이플러스프라자가 다양한 특별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 원고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등

원고들은 포털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던 중 하이플러스프라자를 알게 되어, 위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당시 위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는 “수많은 언론에서도 극찬한 하이플러스프라자”라는 제목 밑에 피고들의 상호가 배너(banner)²⁾ 형태로 게시되어 있었고, 이를 클릭하면 이와 링크된 이 사건 각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위 홈페이지의 중간 하단에는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이 수여한 2011년도 E-biz 브랜드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이 그래픽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읽고 또한 하이플러스프라자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에서 2011년에 E-biz 브랜드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량한 쇼핑몰 업체라고 판단하여 위 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하여 전자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제품주문을 하여 2011. 6. 28.부터 2011. 7. 16.까지 사이에 각 물품대금 상당인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액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아무런 제품도 배달받지 못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하이플러스프라자를 운영한 이○○, 이○○는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480, 2012노116, 270(병합)]을 선고받았다³⁾.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갑 7호증의 28, 갑 16호증, 갑 20호증, 갑 34호증의 1 내지 갑 50호증, 을가 5 내지 을가 9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들은 각 공신력 있는 유명 언론사들로서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각 기사는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이 심한 것이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자신들의 인터넷 신문에 그대로 게재하였고, 이런 기사를 신뢰한 원고들이 하이플러스프라자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고의, 과실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2) 홈 페이지에 띠 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인터넷상의 광고 형태. 처음에는 직사각형의 모양에 도메인과 사업 내용을 알리는 단순한 형태로 시작했으나, 요즘에는 동화상을 넣는 형태나 홈 페이지를 열면 화면에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형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3) 이후 이○○ 등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기사 마지막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고 명시하였고,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의 기사에는 그 작성자가 '이○○ 객원기자 ○○○○○○○○○@osen.co.kr'로 되어 있으며, 피고 헤럴드미디어의 기사에는 그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일반인도 쉽게 이 사건 각 기사가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하이플러스나 그 언론홍보 대행사가 제공하는 광고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인 피고들에게 그 광고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단순한 광고가 아닌 '기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외부에서 제공된 '기사형 광고'를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들의 소속 기자들이 위 기사들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기사형 광고'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기사가 '단순한 광고' 인지 여부 - 부정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등의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기사에 대한 신뢰는 해당 언론기관이 가지는 높은 정보수집능력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에 근거한 것이므로, 언론기관이 이 사건 각 기사와 같이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기사형 광고'⁴⁾를 그 작성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게재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백히 표시하여 독자로 하

여금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독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도기사'를 게재한 언론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의 기초사실 및 갑 2호증의 2 내지 5, 갑 20호증, 을다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에는 그것이 광고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사의 형식도 일반적인 보도기사와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는 사실,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의 기사 끝부분에는 기사의 작성자가 위 피고임을 전제로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전재-재배포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주식회사 오에스이엔(osen)과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앞서 본 기사를 제공받아 게재하였는데, 그 기사 마지막에는 그 작성자가 '객원기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기사가 '뉴스'로 검색되고 있는 사실, 피고 헤럴드미디어의 기사는 인터넷 신문의 '뉴스' 부분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객관적인 위치에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기사처럼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접한 독자들로서는 위 기사들이 단지 특정 상품이나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라기 보다는 언론사가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라고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언론 매체에 게재되는 기사의 저작권은 기사 작성자가 소속하는 언론사가 가지는 반면, 광고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있는데,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의 기사 마지막 부분에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전재-재

4) Advertorial = Advertisement + Editorial

배포 금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 독자로서는 위 기사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에 의해 작성된 ‘보도기사’라고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의 기사 마지막에는 작성자가 ‘객원기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 독자들은 ‘객원기자’의 명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쉽지 않고, 이를 언론사의 밖에서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관련 언론사에 송고하는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로 판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보도기사’의 게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사의 진실성을 조사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는지 여부 - 일부 긍정

광고는 광고주의 이름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언론 광고에 대한 신뢰는 고도의 정보 수집능력을 가지는 언론의 보도기사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광고의 매개(媒介)업무를 담당하는 언론으로서의 언론 광고가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에 비추어 일반 독자의 신뢰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광고의 내용에 의심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해 독자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가할 것을 예견하거나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허위의 광고를 독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언론은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그것이 광고임을 명백히 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고, 또한 언론 자신이 게재하는 기사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사 내용을 신뢰한 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보도기사’와의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한 형태로 게재되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일반 보도기사와 동

일하게 해당 기사의 내용에 의심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이 ‘하이플러스프라자’를 홍보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일부 기사의 경우에는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기사는 ‘기사형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써 광고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도기사로 오해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위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게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이하에서는 위 3인의 피고들을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라 한다)의 기사에는 ‘1년 이상 또는 다년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하이플러스는 2011. 3. 11.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사내용은 명백히 허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하이플러스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하이플러스가 사업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하이플러스프라자의 운영자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위 피고들의 상호를 배너 형태로 게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원고들이 위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의 상호에 링크되어 있는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를 보고 하이플러스프라자 홈페이지의 게시내용을 신뢰하여 위 사이트에서 전자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 제품주문을 하면서 2011. 6. 28.부터 2011. 7. 16.까지 사이에 각 물품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위와 같

은 구매결정에 이른 것은 우리사회에서 상당한 공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언론기관인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의 경우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Digital YTN E-biz 브랜드 대상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조참가인에게 2011년 E-biz 브랜드 대상업체의 선정 및 운영업무를 대행시켰고, 그 결과 사업경력이 3개월도 되지 아니한 하이플러스플라자가 간단한 설문조사 등만으로 E-biz 브랜드 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위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일반 독자들로서는 위 브랜드 대상 수상이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인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이 실시한 엄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은 허위내용의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고, 아울러 피고 디지털와이티엔은 위와 같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하이플러스플라자를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업체로 선정하여 하이플러스플라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광고하게 함으로써, 이○○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구매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헤럴드미디어가 게재한 기사에는 다른 피고들의 기사에서와 같은 '1년 이상 또는 다년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기사의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다소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피고가 게재한 기사로 인하여 이○○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범행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피

고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과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피고 헤럴드미디어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기사의 진실성을 조사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고, 피고 헤럴드미디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대부분이 하이플러스플라자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일부 기사의 경우에는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기사는 비록 기사의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광고인 이른바 '기사형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접하는 독자들이 위 각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보았다면 기사의 목적이 단순히 객관적 진실을 밝히거나 순수한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특정 업체인 하이플러스플라자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이 앞서 본 구매행위에 나아가게 된 원인이 오로지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의 이 사건 각 기사를 본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이 하이플러스플라자에서 제시하는 저렴한 가격 등에 현혹된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 보이는 점, 하이플러스플라자가 제시한 가격은, 온라인 쇼핑몰이 제시하는 가격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기적인 거래가 적지 아니하므로 원고들로는 스스로 위 거래업체의 실적 등

을 확인하거나 대금 지급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사기 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상품 구매를 결정한 소비자들에게 그 구매로 인한 결과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시키는 것이 대량·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의 거래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광고매체인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 얻은 광고수입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이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2 피해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인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디지털와이티엔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헤럴드미디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만경

판사 심병직

판사 김석재

(별지 1, 3-1, 3-2, 3-3 생략)

[별지 2]

피해내역

순번	원고	피해일시 ⁵⁾	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1	임○○	2011. 7. 8.	664,000	199,200
2	조○○	2011. 7. 13.	295,850	88,755
3	김○○	2011. 7. 11.	1,674,220	502,266
4	안○○	2011. 7. 14.	1,105,800	331,740
5	이○○	2011. 7. 13.	247,600	74,280
6	정○○	2011. 7. 12.	2,081,620	624,486
7	이○○	2011. 7. 8.	2,414,700	724,410
8	임○○	2011. 7. 9.	252,000	75,600
9	김○○	2011. 7. 4.	2,578,260	773,478
10	백○○	2011. 7. 14.	2,586,020	775,806
11	정○○	2011. 7. 12.	1,257,120	377,136
12	이○○	2011. 7. 4.	1,020,440	306,132
13	최○○	2011. 7. 12.	309,430	92,829
14	이○○	2011. 7. 11.	331,740	99,522
15	최○○	2011. 7. 11.	3,458,950	1,037,685
16	나○○	2011. 7. 12.	522,500	156,750
17	이○○	2011. 6. 29.	2,955,000	886,500
18	신○○	2011. 7. 12.	672,210	201,663
19	차○○	2011. 7. 9.	646,020	193,806
20	최○○	2011. 7. 6.	1,336,850	401,055
21	안○○	2011. 7. 8.	372,000	111,600
22	서○○	2011. 7. 13.	2,487,000	746,100
23	이○○	2011. 7. 11.	303,000	90,900
24	우○○	2011. 7. 7.	369,000	110,700
25	이○○	2011. 7. 13.	532,000	159,600
26	오○○	2011. 7. 3.	455,000	136,500
27	김○○	2011. 7. 12.	1,025,290	307,587
28	김○○	2011. 7. 11.	430,680	129,204

5) 피해일이 다수인 경우 최초 피해일만 기재

29	선○○	2011. 7. 11.	1,128,210	338,463
30	전○○	2011. 7. 12.	1,057,300	317,190
31	김○○	2011. 7. 6.	855,000	256,500
32	허○○	2011. 7. 12.	1,191,160	357,348
33	김○○	2011. 7. 14.	342,410	102,723
34	구○○	2011. 7. 13.	1,141,690	342,507
35	정○○	2011. 7. 12.	1,396,000	418,800
36	김○○	2011. 6. 29.	230,000	69,000
37	임○○	2011. 7. 12.	2,203,840	661,152
38	송○○	2011. 7. 11.	1,470,520 ⁶⁾	441,156
39	손○○	2011. 7. 6.	1,035,000	310,500
40	김○○	2011. 7. 12.	220,190	66,057
41	김○○	2011. 7. 3.	882,700	264,810
42	방○○	2011. 7. 10.	280,000	84,000
43	한○○	2011. 7. 13.	895,310	268,593
44	유○○	2011. 7. 12.	2,204,810	661,443
45	김○○	2011. 7. 13.	1,317,260	395,178
46	유○○	2011. 7. 7.	2,309,000	692,700
47	맹○○	2011. 7. 5.	881,000	264,300
48	최○○	2011. 6. 30.	230,000	69,000
49	정○○	2011. 7. 5.	983,810 ⁷⁾	295,143
50	홍○○	2011. 7. 13.	624,680	187,404
51	김○○	2011. 7. 12.	294,000	88,200
52	박○○	2011. 7. 13.	1,373,520	412,056
53	이○○	2011. 7. 2.	1,816,500	544,950
54	지○○	2011. 7. 11.	1,584,010	475,203
55	장○○	2011. 7. 16.	320,000	96,000
56	제○○	2011. 7. 12.	796,370	238,911
57	유○○	2011. 6. 28.	770,000	231,000
58	정○○	2011. 7. 14.	1,824,570	547,371
59	송○○	2011. 7. 12.	321,100	96,330
60	노○○	2011. 7. 14.	255,110	76,533
61	박○○	2011. 7. 4.	270,000	81,000
62	송○○	2011. 7. 8.	767,000	230,100
63	최○○	2011. 7. 12.	1,145,570	343,671
64	이○○	2011. 7. 7.	1,284,000	385,200
65	차○○	2011. 7. 11.	380,240	114,072
66	장○○	2011. 7. 13.	895,310	268,593
67	이○○	2011. 7. 6.	378,000	113,400
68	김○○	2011. 7. 10.	1,073,790	322,137

69	홍○○	2011. 7. 8.	303,000	90,900
70	조○○	2011. 7. 2.	741,200	222,360
71	안○○	2011. 7. 8.	1,295,920	388,776
72	김○○	2011. 7. 11.	1,317,260	395,178
73	조○○	2011. 7. 4.	943,140	282,942
74	김○○	2011. 7. 12.	803,160	240,948
75	조○○	2011. 7. 14.	928,290	278,487
76	강○○	2011. 7. 9.	338,000	101,400
77	변○○	2011. 7. 11.	556,780	167,034
78	송○○	2011. 7. 9.	318,000	95,400
79	조○○	2011. 7. 10.	786,600	235,980
80	김○○	2011. 7. 15.	550,960	165,288
81	강○○	2011. 7. 13.	870,090 ⁸⁾	261,027
82	권○○	2011. 7. 11.	544,000	163,200
83	정○○	2011. 7. 11.	380,240	114,072
84	노○○	2011. 7. 11.	876,880	263,064
85	황○○	2011. 7. 8.	578,000	173,400
86	이○○	2011. 7. 9.	295,000	88,500
87	오○○	2011. 7. 11.	472,390	141,717
88	김○○	2011. 7. 6.	844,000	253,200
89	김○○	2011. 7. 11.	572,300	171,690
90	박○○	2011. 7. 4.	1,990,440	597,132
91	최○○	2011. 7. 13.	1,999,170	599,751
92	최○○	2011. 7. 11.	351,140	105,342
93	김○○	2011. 7. 13.	308,460	92,538
94	김○○	2011. 7. 13.	391,880	117,564
95	김○○	2011. 7. 13.	428,000	128,400
96	참○○○○	2011. 7. 6.	1,638,000	491,400
97	김○○	2011. 7. 11.	1,545,210	463,563
98	정○○	2011. 7. 12.	554,000	166,200
99	권○○	2011. 7. 12.	672,210	201,663
100	박○○	2011. 7. 12.	991,800	297,540
101	김○○	2011. 7. 13.	787,500	236,250
102	안○○	2011. 7. 14.	895,810	268,743
103	박○○	2011. 7. 13.	11,046,360	3,313,908
104	한○○	2011. 7. 14.	1,321,140	396,342
105	안○○	2011. 7. 8.	839,050	251,715
합계			110,888,660	33,266,598

6) 청구취지에서는 '1,407,5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6호증의 38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1,470,52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7) 청구취지에서는 '980,8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6호증의 49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983,81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8) 청구취지에서는 '870,59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6호증의 81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870,09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외국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 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일본판례]

입증조사 없이 소문이라는 표현을 빌어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가.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신사옥의 용지로 한 합동청사의 철거지를 경매에 의하지 않고 헐값에 도시재생기구가 취득도록 하여 그 권리를 차지했으며 그 후 용적률을 1,590%로 끌어올려 용적률 700%로 계산된 불하가격과의 차이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기사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대해 마치 원고가 신사옥의 부지를 취득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나.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표현을 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소문 자체의 존재가 아닌 그 소문의 내용인 사실이 적시사실로 해석된다(최고재판소 1968년 1월 18일 제1소법정 판결). 그러므로 「“죽림의 방”은 임원의 친척에게 발주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는 기사는 「원고는 신사옥의 응접

실의 공사 등을 부정하게 원고의 임원이 친척에게 발주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 원고 직원들의 자살에 관한 기사 내용은 전해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애매함으로 이러한 증거만을 가지고 파위하라(직권을 이용한 괴롭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입증조사가 필요한데 피고들에게서는 입증조사를 한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피고들이 원고 내부직원들의 소문을 가지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공성·공익성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도쿄지방법원

민사제5부

판 결

사건 : 도쿄지법 2010(7) 제15862호

원고 : 주식회사 X신문사

대표이사 니노미야 아키오(二宮昭男)

피고 : 주식회사 Y

대표이사 코오노 하루히코(甲野春彦) 외 1명
판결선고 : 2011. 6. 8.
참조조문 : 민법 709조 · 723조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연대하여 160만엔을 지불하라.
2. 원고의 다른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0등분하여 그 1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 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4,500만엔을 지불하라.
2. 피고들은 원고회사 X회사가 발행하는 「X신문」 및 피고회사 Y가 발행하는 월간지 「WAI」에 별지 1 기재의 사과기사를 별지 2 기재의 게재조건으로 게재하라.

제2. 사건의 개요

1. 본 사건은 신문사를 운영하는 원고가 주식회사 Y(이하「피고회사」로 한다)가 발행하는 월간지 「WAI」(이하「본건잡지」로 한다)에 게재된 원고에 관한 2건의 기사(이하「본건각기사」로 한다)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코호노 하루히코(甲野春彦)(이하「피고 코호노」로 한다), 본건잡지의 발행인인 피고 오토야마 나츠히코(乙山夏彦)(이하「피고 오토야마」로 한다)에 대해

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4,500만엔 지불과 ② 원고가 발행하는 「X신문」 및 본건잡지에 사과기사의 게재를 요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본건각기사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과 공익성, 진실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 전제사실

이하의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1) 원고는 일간신문의 제작,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X신문 등 일간신문, 디지털매체, 잡지, 서적, 방송 등의 미디어를 통해 경제정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국내외에 발신하고 있다.

피고회사는 잡지 및 서적의 편집,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월간지 「WAI」(본건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본건잡지는 회당 발행부수 3만 6천부의 월간지이며, 주된 독자층은 기업의 임원과 부·과장 등 이상(전체의 70%)이다.

피고 코호노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오토야마는 본건잡지의 발행인이다.

(2) 피고는 본건잡지 2008년 8월호에 이하의 기술(이하「본건기술1」로 한다)을 포함한 기사(이하「본건기사1」로 한다)를 게재했다.

【주제목】

X미디어그룹 「이치노세·니노미야체제」의 미주^① 편집국장 경험 없는 니노미야 사장 탄생으로 「관리주도인사」가 실시되었으나 광고부진은 멈추지 않아

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사내정보통)고 한다. (후략)
(상기 기술을 이하「본건기술2」로 한다)

【소재목2】

파워하라 방지교육 실시 중

【본문】

(전략)

편집국장 경험이 없는 니노미야 사장이 취임한 후에는 관리 부문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한 영향일까, 사내와 자회사에서는 파워하라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작년 6월, X신문의 자회사인 Z사에서 최고경영진으로부터 업적악화의 책임을 추궁 받은 부장이 행방불명되었다.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책임추궁이 두려워 모회사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금년 4월 편집국의 I기사심사부장이 지주막하출혈⁵⁾로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직전 회의에서 매도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파워하라와도 무관하지 않다.

(중략)

같은 4월경 편집국 생활경제부의 C기자(여성)가 상사의 파워하라에 고통을 받아 자살했다.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자살 방법으로 인해 사원들도 두려워했다고 한다.

X신문 관계자는 이와 같이 말했다.

「5월경 파워하라 방지교육이 실시됐다고 들었다. C기자의 자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4월말 즈음 파워하라 방지를 위해 회사규칙을 개정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야 알았다」

(상기 기술을 이하「본건기술3」으로 한다)

(4) 원고는 내각에 설치된 토지재생본부의「오테마치 연쇄형 도시재생프로젝트」에 근거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하「본건재개발」로 한다)에서 오테마치지구에 소유하고 있던 구사옥의 부지(이하「구부지」로 한다)에 대해 합동청사 철거지의 일부(이하「본건토지」로 한다)를 가환지⁶⁾로 지정받아 합동청사 철거지에 건설된「X빌딩, JA빌딩, 경제단체연합회관」가운데 일부를 원고의 신사옥으로 했다.

(5) 2008년 6월 20일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Z사(이하「Z사」로 한다) 해외여행파트의 미즈이 부장이 자살로 사망했음이 알려졌다. 또한 2009년 3월 16일 원고의 편집국 기사심사부 요쓰야 부장이 사내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했다. 동년 5월 2일에는 원고의 편집국 생활경제부의 이즈키 기자(여성)가 사망했다.

3. 쟁점 및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본건기술1은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 내지 논평의 표명인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가 (쟁점1(1))

(원고의 주장)

본건기술1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이하「원고적시 사실1」로 한다), 원고적시사실1은 일반 독자에 대해 보도기관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

(피고들의 주장)

부인 내지 다툰다. 본건기술1은 원고의 보도기관으로서의 자세에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의견 내지 논평에 해당한다.

5) 蜘蛛膜下出血・뇌동맥류 파열

6)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관계자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실제 한지처분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한지처분 전에 예정지로 미리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법정용어로는 한지에정지라 한다.

(2) 본건기술1의 공공성·공익성·진실성·상당성 (쟁점1(2))

(피고들의 주장)

가. 본건기술1에 관련한 사안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그 목적은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본건기술1은 피고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히노에카와 기자가 본건재개발관계자로부터 취재하여 관련자로 확인을 토대로 집필한 것이므로 원고적시사실1은 진실 혹은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원고의 주장)

부인 내지 다툰다.

(3) 본건기술2에서 적시된 사실은 무엇이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가 (쟁점2(1))

(원고의 주장)

본건기술은 소문이 존재한다는 기술인데, 소문의 내용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원고임원이 “죽림의 방”이라는 신사옥의 응접실을 적절한 절차 없이 친척에게 발주했다는 기술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이하 「원고적시사실2」로 한다). 따라서 원고적시사실2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

부인 내지 다툰다. 본건기술2는 소문의 존재를 적시한데 불과하며 따라서 본건기술2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4) 본건기술2의 공공성·공익성·상당성 (쟁점2(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형신문사이다. 본건기술2와 같이 그러한 신문사의 임원이 친척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한 것이다.

나. 피고 오토야마는 원고의 신사옥 최상층에 있다는 “죽림의 방”이라는 호사스러운 응접실이 임원의 친척에게 발주되었다는 소문을 전해들은 후 원고 사회사의 다른 기자로부터도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본건기술2를 집필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적시사실2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원고의 주장)

부인 내지 다툰다. 원고적시사실2는 공공성, 공익성이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적시사실2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도 없다.

(5) 본건기술3에 적시된 사실은 무엇이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가 (쟁점3(1))

(원고의 주장)

본건기술3은 ① 원고회사의 사장 취임 후 X신문 사내와 자회사에서 파워하라가 잇달아 일어났다. ② 2008년 6월 Z사에서 부장이 최고경영진으로부터 업적악화의 책임을 추궁 받는 파워하라로 자살했다. ③ Z사는 파워하라로 종업원이 자살한 책임 추궁이 두려워 모회사인 원고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④ 2009년 4월 원고의 편집국 기사심사부장이 회의에서 매도되는 파워하라를 당한 후 사내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했다. ⑤ 원고의 편집국 생활경제부 여성기자가 상사의 파워하라로 인해 자살했다는 사실 등을 적시한 것이다(이하 「원고적시사실3」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적시사실3은 일반 독자에 대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훼손한다.

(피고들의 주장)

부인 내지 다툰다.

가. 본건기술3은 원고 및 원고자회사에서 파워하라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 것에 불과하다.

나. 본건기술3과 같이 단순히 파워하라의 의심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

(6) 본건기술3의 공공성·공익성·진실성 (쟁점3(2))

(피고들의 주장)

가. 본건기술3과 같이 일반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원고에게 파워하라의 의심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다.

나. 피고 오토야마는 다음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여 본건기술3을 집필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적시사실3을 진실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가) Z사의 미즈이 부장의 자살에 대해 피고 오토야마는 원고의 전 논설위원인 요우로다니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내용은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구체적인 것이었다.

(나) 원고의 요쓰야부장 사망에 대해 피고 오토야마는 원고의 기자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는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자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다) 원고의 이츠키 기자 자살에 대해 피고 오토야마는 복수의 신뢰할 수 있는 원고의 현직기자, 퇴직자, 원고사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의 주장)

부인 내지 다툰다. 원고적시사실3은 공공성, 공익성이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적시사실3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도 없다.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전기「전제사실」에 증거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가. 원고는 도쿄도심부의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자들로 구성된 「오테마치(大手町)·마루노우치(丸の内)·유라쿠쵸(有楽町)지구 재개발계획추진위원회」(이하「본건협의회」로 한다)의 회원이었다.

2003년 1월 내각에 설치된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재생프로젝트(제5차 결정)를 결정, 오테마치지구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본건재개발). 이것은 오테마치지구의 합동청사 철거지에 주변토지소유권자의 토지를 환지하여 재건축사업을 한 다음 순차적으로 환지와 재건축을 시행, 오테마치지구 전체의 재개발을 진행하는 연쇄형 재개발프로젝트였다.

나. 원고는 2003년 3월 도쿄도, 치요다구 및 다른 토지소유권자들과 함께 합동청사 철거지를 활용한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발족한 「오테마치도시계획추진회의」(이하「본건회의」로 한다)에 참여했다. 또한 원고는 다른 토지소유권자 10개사와 공동출자하여 2003년 8월 26일 본건재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오테마치도시계획주식회사」(이하「도시계획회사」로 한다)를 설립, 동사의 이사로서 원고측 이사 1명을 취임시켰으며, 이후에도 원고측 이사 1명이 지속하여 자리하고 있다.

다. 본건회의 및 도시계획회사는 도시재생기구에 대해 본건재개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① 재개발지구에서의 건축물 정비는 도시계획회사 등 민간이 할 것, ② 합동청사 철거지의 취득에 있어서는 현행 용적률 700%를 전제로 한 평가를 근거로 교섭을 할

것, ③ 개발이익은 사업시공자나 참여한 토지소유권자 등의 공헌도를 배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할 것 등을 제의했다. 본건회의는 2004년 3월 30일 합동청사 철거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용적률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라. 도시계획회사는 본건재개발에서 시가지재개발 사업을 시공하는 유한회사 오테마치개발에 자금을 주입하는 등 그 설립과 운영에도 관계하고 있었다. 유한회사 오테마치개발은 도쿄도, 치요다구 및 도시재생기구 등과 아래와 같은 합의서 및 협정을 체결하고 그 취지에 합의했다.

(가) 2004년 10월 19일자「오테마치도시계획기본합의서」(① 합동청사 철거지의 취득에 있어서 도시재생기구가 재무성에 제시하는 상한가격은 도시재생기구와 도시계획회사의 합의로 결정할 것, ② 도시계획회사는 본건토지의 약 3분의 2를 도시재생기구로부터 양수받을 것)

(나) 2005년 2월 28일자「오테마치도시계획기본협정서」(①오테마치지구의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본건회의에서 토지소유권자 등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가면서 진행할 것, ② 유한회사 오테마치개발은 합동청사 철거지의 공유지분 3분의 2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수익권을 도시재생기구로부터 양수받을 것 ③ 도쿄도는 합동청사 철거지 등을 도시재생특별지구로 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예정할 것, ④ 도시재생특별지구에서는 도시재생 공헌도에 따라 용적률을 설정한다는 것을 예정할 것)

마. 원고는 본건재개발에 근거하여 2006년 9월 21일 동 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구부지에 대해 합동청사 철거지의 일부(본건토지)를 가환지 지정을 받았으며 동지정은 동월 25일에 발효됐다.

1999년 당시 구부지의 용적률은 1,000%, 본건토지

의 용적률은 700%였으나 본건재개발에 의해 모두 용적률이 완화되어 상기 가환지 지정의 시점에서는 구부지의 경우 1,470%, 본건토지의 경우 1,590%로 되어있었다. 더욱이 구부지에 대해서는 그 후 용적률이 1,570%로 완화되었다. 또한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이에 본건토지의 노선가⁷⁾는 일관해서 구부지의 노선가를 밑돌고 있다.

바. 합동청사 철거지에 「X빌딩, JA빌딩, 경제단체연합회관」이 건설되었다.

원고는 동건물의 보류상⁸⁾으로 시설건설부지 등의 대금 3,200,263,000엔, 시설건축물대금 28,943,284,979엔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바닥면적 합계 62,620㎡를 원고의 신사옥부지로 건축했다. 원고의 구사옥 바닥면적은 38,490㎡였다.

원고의 신사옥 건설공사는 공모로 확정된 주식회사 닛켄설계가 설계와 설계감리를 수주하고, 시미즈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했다. 신사옥의 31층에는 응접실이 마련되었으며 그 앞의 복도와 회의실 밖의 공간에는 대나무가 심어져있는 공간이 있다.

(2) 가. 본건재개발과 관련 도쿄도의 예산특별위원회 및 도시정비위원회, 참의원의 재무금융위원회 및 행정개혁특별위원회, 중의원의 재무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는 합동청사 철거지에 대해 용적률이 증가될 예정이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매각시점의 용적률에 근거한 가격으로 경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문제이며, 재건축된 빌딩에 입주하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논의되었다.

나. 피고 오토야마와 히노에카와 기자는 유력신문 등 각사의 동향을 리포트하는 4회의 기획기사「TV와 신문『신용합시대』를 본건잡지에 게재할 것을 기획

7) 가로에 접해 있는 획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가격

8) 사업시행 전 각 권리자의 권리 종류와 그 자산액의 크기에 따라 사업 완료 후 건물의 대지나 연면적에 대해 권리를 부여받는 것

했다. 히노에카와 기자는 이 기획에 따라 도시기반정비공단, 도시계획회사, 본건협의회, 도쿄도, 도쿄도의회, 중의원, 참의원 등을 위시로 여러 곳을 취재하여 자료를 입수, 본건기사1의 원고를 집필했다.

다. 피고 오토야마는 이 원고를 필요에 따라 가감하거나 정정하는 한편 주제목과 소제목을 붙이는 작업을 거쳐 기사화했으며 본건기사1은 본건잡지 2008년 8월호에 게재되었다.

(3) 가. 2008년 6월 19일 심야에 Z사의 해외여행파트 부장인 미즈이 부장이 자살하여 다음날인 20일에 발견되었다. 미즈이 부장은 동년 4월에 부장으로 취임, 약 2개월여 후에 자살했다. Z사는 6월 20일 정오 전에 코후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미즈이 부장의 자살을 알게 되었으며, 담당자가 미즈이 부장의 모친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 확인한 후 원고에게 보고했다. 장례에는 원고의 전무가 참석했으며 원고는 조화를 보냈다. 이즈음 Z사의 결산상황은 2008년 12월 기결산으로 영업이익이 5,350만엔, 이 가운데 해외여행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많은 3,146만엔이었다.

나. 2009년 3월 16일 오후 5시30분경 원고의 편집국 기사심사부 요쓰야 부장이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동년 4월 3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요쓰야 부장은 쓰러지기 직전인 오후 5시부터 편집국 부장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요쓰야 부장은 누구로부터도 매도당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이즈음 원고의 사내에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사원이 있었으나, 편집국 차장 겸 관리부장인 무다 후유히코를 중심으로 사내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쓰야 부장이 사망하기 6일 전인 동년 3월 10일 동 사원에 대한 처분이 내려져 있었다.

다. 2009년 5월 2일 원고의 편집국 생활경제부 여성기자인 이츠키 기자가 사망했다. 이츠키 기자는 2008년 3월 1일 생활경제부에 배치되었는데 동년 10

월 하순부터 2009년 2월 9일 출산 때까지 산전휴가를 받은 후 육아휴가 중에 사망했다.

(4) 가. 피고 오토야마는 2009년 8월 27일 발매된 「週刊現代」(8월 22일·29일 합병호)에 게재된 기사「신문·TV는 죽는 것인가」를 읽고 원고의 신사옥 최상층에 「죽림의 방」이라고 부르는 호화스러운 응접실이 있다는 소문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원고의 퇴직자 등을 상대로 취재를 했다. 원고의 퇴직자로부터 「죽림의 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죽림의 방」이 이치노세 회장의 친척에게 발주되었다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고 원고의 현역기자, 원고 자회사에 다니고 있는 다른 기자로부터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나. 피고 오토야마는 2009년 8월 하순 원고 및 자회사에서의 파워하라 의혹에 관해 다음과 같은 취재를 했다.

(가) Z사의 미즈이 부장 자살에 관해 피고 오토야마는 원고의 전 논설위원이었던 요우로다니로부터 자신 앞으로 원고를 내부 고발하는 서신이 왔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는 「해외여행파트 부장이 자살한 이유는 상사가 회사의 업적 부진 책임을 부장 1인에게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Z사는 책임 추궁이 두려워 원고에 대한 보고를 태만했다」는 기재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나) 원고의 요쓰야 부장 사망에 관해 부장회의 석상에서 상사로부터 면박을 받은 요쓰야 부장은 회의 직후 문제가 있는 부하와 통화하던 중 쓰러져 구급차로 옮겨져 병원에 입원했으나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는 말을 원고의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들었으며 「X의 불상사」라는 블로그에도 전기와 같은 내용의 기입이 있음을 확인했다.

(다) 생활경제부 이츠키 기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원고의 현직기자, 퇴직자, 원고사원 등 복수의 사람들로

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츠키 기자에 대해 상사가 여러 가지 추궁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자택에 화재를 일으켜 자살한 것 같고 현장에 어린이 하나가 있었으나 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 피고회사는 본건기사2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경영기획실 홍보부서에 대해 「죽림의 방」의 유무, 층수 및 발주처와 파워하라 방지를 위한 회사규칙개정 의 유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죽림의 방」이라는 호사스러운 특별한 응접실은 없으며 경영간부의 친척에게 응접실의 설계를 발주한 사실도 없고 회사규칙도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고 회답했다.

라. 피고 오토야마는 이러한 원고의 회답도 포함하여 원고를 작성했으며, 본건기사2가 본건잡지 2009년 10월호에 게재되었다.

2. 쟁점1(1)(본건기술1은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 내지 논평의 표명인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가)에 대하여

(1) 어떤 기사의 의미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의 여부는 당해기사에 대한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한다(최고재판소 1956년 7월 20일 제2소법정 판결).

(2) 본건기술1은 「X의 물 파기『연금술』이라는 소재목 하에 「현재 X의 신문사로서의 자세에 대해 커다란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기반정비공단(현 도시재생기구)을 중간에 넣어 교묘히 경매를 피해 토지의 권리를 획득했다.」 「보도기관으로서의 자각이 심히 결여되어있다.」 「용적률 700%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구계획 및 토지용도 변경까지 했으며, 이로 인해 용적률이 1,200%로 끌어 올려졌다. 이후 추가적으로 『도시재생특별지구』지정까지 받아 다시 1,590%까지

끌어 올리는데 성공했다. 한편 1㎡당 970만엔으로 건적된 불하가격은 종래의 용적률 700% 기준 산출된 가격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대담한『연금술』앞에서는 웬만한 언론기관의 경우 망설이게 된다. 그러나 X신문사는 그러한 양심이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오히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었다.

이러한 본건기술1을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신사옥의 용지로 한 합동청사의 철거지를 경매에 의하지 않고 헐값에 도시재생기구가 취득토록하여 그 권리를 차지했으며 그 후 용적률을 1,590%로 끌어올려 용적률 700%로 계산된 불하가격과의 차이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이하 「본건적시사실1」로 한다).

본건적시사실1은 일반 독자들에게 대해 마치 원고가 신사옥의 부지를 취득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3) 피고들은 본건기술1은 본건재개발에서의 갖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이를 「연금술」이라고 평하고 있으며 보도기관인 원고는 이러한 일부의 민간기업이 이익을 챙기는 결과가 되는 재개발의 문제점을 검증하여 보도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도 혜택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보도기관으로서의 자세에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의견 내지 논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기술1은 「X의 물 파기『연금술』이라는 소재목 하에 갖가지 기재가 되어있고, 이러한 기재내용 전체를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본건적시사실1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전제사실 하에서 원고의 보도기관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의견 내지 논평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본건적시사실1로 인해 일반 독자들이 원고가 보도기관으로서의 양심이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적시사실1과 원고가 보도기관으로서의 양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보도가 중립·공평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일반 독자가 상기적시사실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인상까지 받을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하지만 원고가 양심이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기술은 그 자체가 의견 내지 논평형의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으나, 이것은 본건기술1에서 적시된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3. 쟁점(2)(본건적시사실1의 공공성·공익성·진실성·상당성)에 관하여

(1) 피고들은 본건적시사실1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원고는 본건회의 관여와 함께 도시계획회사에도 관여하여 동사의 이사에 원고의 이사를 취임시키기도 했으며, 본건회의 및 도시계획회사는 도시기반정비공단에 대해 본건재개발사업에의 참여도 요청했다. 또한 동사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유한회사 오테마치개발의 운영에도 관여했으며, 유한회사 오테마치개발과 도시재생기구 등과의 합의에 의해 도시재생기구는 합동청사 철거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용적률을 변경한 경위를 보면 원고는 오테마치 지역의 토지소유권자로서 본건재개발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하여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로서 본건토지를 가환지로 지정받아 신사옥을 취득했다.

② 구부지와 본건토지의 가치가 동일할리도 없고 신사옥은 구사옥보다 바닥면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훨씬 대규모로 최신설비를 갖추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는 본건재개발에 의해 이익을 취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상기 ①에 대해, 원고는 내각에 설치된 도시재생본부에 의한 2003년 1월의 토지재생프로젝트에 근거하여 오테마치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던 구부지에 대해 합동청사 철거지의 일부(본건토지)를 가환지로 지정받은 사실은 전기1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가 본건재개발을 추진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가 중심이 되어 도시재생기구에 합동청사 철거지를 구용적률로 구입하게 했다는 것, 이로 인해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추인할 수는 없다.

상기 ②에 대해서는 신사옥은 그 바닥면적이 구사옥보다도 대폭 늘어나는 등 대규모로 최신설비를 갖추었으나, 구부지와 본건토지의 면적이 거의 같다는 사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이에 본건토지의 노선가는 지속적으로 구부지의 노선가를 밀돌았다는 사실, 원고가 신사옥의 바닥 증가분의 취득비용으로 약 289억엔을 지불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지적하는 점들만 가지고 원고가 본건재개발에 의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추인할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본건적시사실1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2) 피고들은 본건적시사실1을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① 히노에카와 기자는 본건기술1의 원고를 집필하면서 본건재개발관계자에 대한 취재, 관련 자료의 확인·검토, 신중한 취재와 검증을 거듭했으며 ② 위에서 서술한 원고의 본건재개발에 대한 깊이 관여했으며 구사옥보다 훨씬 대규모로 최신설비를 갖춘 신사옥을 건설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상기 ①의 히노에카와 기자의 취재에 관한 증거는 합동청사 철거지가 도시재생기구에 헐값으로 매각된 것은 부당하며 원고도 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을 기술한데 불과하며 원고가 본건재개발에서 도시재생기구에 헐값으로 합동청사 철거지를 취득하게 했

다든가 이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 ②에 관해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기구 등의 홈페이지 등에는 오테마치의 재개발, 그에 수반되는 용적률의 변경 및 연쇄형 개발방식 등에 관해 기재가 되어있고 피고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이들 홈페이지에 액세스하여 오테마치의 재개발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상기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의 신사옥과 구사옥의 소재장소가 동일한 오테마치지구에 있고 도보로 수분 거리에 불과하고, 신사옥의 부지와 구사옥의 부지 면적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으며, 원고가 신사옥의 바닥면적을 늘리기 위해 거액을 출자했음은 전기1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피고들이 본건적시사실1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자료나 증거에 근거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본건적시사실1은 진실이 아니며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공공성·공익성에 관해 판단할 필요도 없이 본건기술1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4. 쟁점2(1)(본건기술2에서 적시된 사실은 무엇인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가)에 관하여

(1) 본건기술2는 「호사스러운 “죽림의 방”, 파워라, 자살, 소송 등 안팎으로부터의 난문」이라는 제목 하에 신사옥의 최상층에는 사원들 사이에서 “죽림의 방”이라고 불리는 넓은 응접실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기재에 이어 “죽림의 방”은 임원의 친척에게 발주되었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표현을 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소문 자체의 존재가 아닌 그 소문의 내용인 사실이 적시사실로 해석된다(최고재판소 1968년 1월 18일 제1소법정 판결). 그러므로 본건기술2는 「소문이 떠돌아 다녔다」고 하는 형식을 빌린 기사이지만 「원고는 신사옥의 응접실의 공사 등을 부정하게 원고의 임원이 친척에게 발주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된다(이하 「본건적시사실2」로 한다).

본건적시사실2의 적시는 일반의 독자들에게 대해 마치 원고의 임원이 친척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원고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

(2) 피고는 본건기술2에 대해 「“죽림의 방”을 임원의 친척에게 발주했다는 소문이 떠돈다」는 소문의 존재를 적시한데 불과하다고 주장,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내세웠다. ① 응접실의 공사 등이 임원의 친척에게 발주되었다는 아무런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으며 임원이나 친척의 이름 등도 쓰지 않았다. ②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해 경영간부의 친척에게 응접실의 설계를 발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회답을 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소문이라는 표현을 빌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대상이 된 인물의 사회적 평가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소문과 관련해 제시된 사실임으로 소문의 내용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해석된다. 실제로 본건기술2는 사내정보통으로부터의 정보라고 밝히면서 “죽림의 방”을 설치한 원고에 대한 비판적 기술에 이어 기재된 것으로 일반 독자들에게 대해 그 내용대로의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원고로부터의 회답부분 기재도 기사의 말미에 그대로 기재한데 불과하여 상기 인상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배려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① 및 ②의 주장

은 본건기술2가 소문의 내용인 본건적시사실2를 적시했다는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 쟁점2(2)(본건적시사실2의 공공성·공익성·상당성)에 관하여

피고들은 본건적시사실2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는 피고 오토야마가 원고의 신사옥 최상층에 “죽림의 방”이라고 부르는 호사스러운 응접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원고의 현직기자와 퇴직자 등과 접촉, 취재한 바 원고의 퇴직자로부터 “죽림의 방”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라든가, “죽림의 방”이 이치노세 회장의 친척에게 발주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자회사에 나가고 있는 다른 기자로부터도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들을 내세운다.

그러나 피고 오토야마의 진술에 의해서도 동 피고는 원고의 현직기자나 퇴직자로부터 “죽림의 방”이 이치노세 회장의 친척에게 발주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후 원고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회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문을 그대로 본건기술2로 하여 기사화한데 불과하며 동 피고는 상기 사실의 입증조사를 태만히 한 채 원고의 현직기자나 퇴직자로부터의 이야기를 신용할 수 있다고 가볍게 여기고 소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본건적시사실2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본건적시사실2에 대해서는 공공성·공익성의 판단을 할 것 필요도 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6. 쟁점3(1)(본건기술3에서 적시된 사실은 무엇인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가)에 관하여

(1) 본건기술3은 소제목을 「파워하라 방지교육 실시중」으로 하고, 본문기사는 「편집국장 경험 없는 니

노미야 사장이 취임한 후로는 관리부문이 한층 강화되었다. 그 영향일까, 사내와 자회사에서는 파워하라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작년 6월 X신문의 자회사, Z사에서 최고경영진으로부터 업적악화의 책임을 추궁당한 부장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자살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책임 추궁이 두려워 모회사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금년 4월 편집국의 I기사심사부장이 X신문사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직전 회의에서 매도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므로 파워하라와도 무관하지 않다. 「같은 4월 경 편집국 생활경제부의 C기자(여성)가 상사의 파워하라에 고통을 받아 자살했다.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자살방법으로 인해 사원들도 두려워했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어 X신문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해서 「5월경 파워하라 방지교육이 실시됐다고 들었다. C기자의 자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4월말 쯤 파워하라 방지를 위해 회사규칙을 개정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야 알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본건기술3은 일반 독자들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원고 및 원고의 자회사에서는 파워하라가 잇달아 일어났으며 파워하라가 원인이 되어 사원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병사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이하 「본건적시사실3」으로 한다).

본건적시사실3의 적시는 일반 독자들에게 대해 마치 원고 및 그 자회사에서 파워하라가 횡행하고 있으며 파워하라 때문에 사원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병사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2) 피고들은 본건기술3의 「파워하라와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기재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원고 및 원고의 자회사에서 파워하라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

며 3명의 사망원인이 파워하라에 있다는 의문을 적시하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기술3은 첫머리에서 「사내나 자회사에서 파워하라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기재되는데다가 Z사의 미즈이 부장의 자살에 대해 「최고경영진으로부터 업적 악화의 책임을 추궁 받은 부장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요쓰야 부장의 사망에 대해서는 「파워하라와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즈키 기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C기자(여성)가 상사의 파워하라에 고통을 느껴 자살했다」고 각각 기재되어있는 것은 앞에서 인정된 사실이며 이러한 기사 전체를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읽으면 본건적시사실3을 적시한 것이다.

피고들은 본건적시사실3은 파워하라가 원인으로 3명의 사원이 사망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병사나 자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요인이 겹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 독자가 파워하라라는 기재에서 3명의 사망원인이 파워하라에 있었다고 경솔하게 믿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본건적시사실3에서는 일반 독자에 대해 마치 원고 및 그 자회사에서 파워하라가 횡행하고 있으며, 파워하라로 인해 사원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병사한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원고의 사회적 인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이며 피고들이 지적하고 있는 점은 상기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7. 쟁점3(2)(본건적시사실3의 공공성·공익성·상당성)에 관하여

피고들은 본건적시사실3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① Z사 부장의 자살에 관하여

피고 오토야마에게 전해진 원고의 전 논설위원인 요우로다니의 내부고발 편지에는 「해외여행파트 부장이 자살한 이유는 상사가 회사의 업적부진책임을 부장 1인에게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Z사는 책임 추궁이 두려워 원고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는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② 원고의 기사심사부장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 오토야마는 원고의 기자로부터 「동 부장은 부장회의 석상에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회의 직후 부하와 전화를 하던 도중에 쓸어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이는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며 「X의 불상사」라는 블로그에도 상기와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③ 생활경제부 여성기자의 자살에 관하여 피고 오토야마는 복수의 신뢰할 수 있는 원고의 현직기자, 퇴직자, 원고사원 등 복수의 사람들로 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즈키 기자에 대해 상사가 여러 가지 추궁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자택에 화재를 일으켜 자살한 것 같고 현장에 어린이 하나가 있었으나 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상기 ① 내지 ③은 전부가 전해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애매함으로 이러한 증거만을 가지고 파워하라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입증조사가 필요한데 피고들에게서는 입증조사를 한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피고들이 상기 ① 내지 ③의 사정만을 가지고 본건적시사실3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적시사실3에 대해서는 공공성·공익성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8. 쟁점4(원고의 손해)에 관하여

이상과 같이 원고는 본건각기사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어 무형의 손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본건각기사의 내용, 본건잡지의 발행부수, 피고들이 일체 사과 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원고가 본소 제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사실 등, 본건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는 본건기사 각각에 대해 각 70만엔의 합계 140만엔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손해배상인용액과 기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상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 비용은 20만엔이 상당하다.

9. 쟁점5(사과기사의 필요여부·내용)에 관하여

본건각기사는 주제목을「X의 룰 파기『연금술』,「호사스러운 “죽림의 방”에 파워하라, 자살, 소송과 내외로부터의 난문이」등으로 하고 본건기술1 내지 3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적시사실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소문이 떠돌았다」,「파워하라와도 무관하지 않다」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에 본건각기사의 명예훼손의 양태 및 정도, 본건잡지의 발행부수,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손해배상 인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사과기사를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제4. 결론

이상에 의하면 당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피고회사는 본건기술1 내지 3에 의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피고 코호노는 본건잡지의 편

집주간으로서, 피고 오토야마는 본건잡지의 발행인으로서 이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160만엔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0년 5월 3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연대지불을 청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나 다른 나머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사과기사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 출처 : 『판례타임즈』1374호/P.167~177

■ 번역 :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미국판례 1]

정보 공개 의무에 따라 요청된 문서를 적절히 편집하더라도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을 포함하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교육부는 기존의 법문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하여 요청한 기록 내에서 지칭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교육기록이 공개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만약 공개된 기록에 의해서, 또는 다른 공개된 정보에 의해서, 이름, 신분 번호, 사건의 날짜와 시간 등을 편집해 내는 것이 징계절차에 관여한 증인, 피해자 등의 학생의 신원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FERPA는 교육기관이나 시설이 그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나. 교육부가 규칙개정제안 및 공지를 통해 설명한 것과 같이 “제안된 규칙은 안내문이 규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2009년 1월 개정의 의도는 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아이오와주 대법원
(Iowa Supreme Court)

원고 : Press-Citizen Company Inc.

피고 : University of Iowa

사건번호: No. 09-1612

판결선고: 2012. 7. 13.

Mansfield, J. 판사 :

이 소송은 Iowa 주 기록물 공개법(Open Records

Act)상의 정보 공개 의무와 연방법인 가정교육원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이하 「FERPA」로 한다) 상의 기밀 보호 의무의 충돌에 관한 판단을 요구한다.

2007년 10월 두 명의 University of Iowa(이하 「Iowa 주립대학」으로 한다) 소속 풋볼 선수들이 학교 기숙사 방에서 다른 학생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범죄 수사 및 고발을 통해 한 선수에 대해선 심각한 상해를 입힐 고의에 의한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다른 한 선수에 대해선 단순 폭행죄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또한 대학 내부조사와 대학의 답변, 외부에서의 대학에 대한 비난, 특별 감사에 의한 수사와 보고서를 야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본 소송의 발단이 되었다.

본 소송은 사건이 제기되고 Iowa City Press-Citizen(이하 「Press-Citizen」로 한다)이 대학에 제출한 기록물 공개법에 의거한 정보 공개 요청에 관한 것이다. 이 요청에 대한 대학의 초기 대응에 만족하지 못한 Press-Citizen은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문서가 공개되었고 일부 문서는 지방법원의 판사 단독 비밀 심리(in camera review)를 위해 제출되었다. 지방법원은 추가 문서 제출을 명령하였고 일부 문서에 대해선 제출 전 필요한 편집을 허가하였다. 대학은 이 명령의 일부에 대해 상소하였다. 대학은 FERPA가 일부 문서, 특히 편집 후에도 학생의 신원정보가 노출될 “교육기록”의 공개를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Press-Citizen은 FERPA가 대학이 기록물 공개법에서의 정보 공개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며, 대학이 FERPA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법원은 아래 서술된 근거를 바탕으로 FERPA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지방법원의 판결을 일부 파기한다.

I. 배경 사실과 소 절차

2007년 10월 14일 이른 일요일 아침, Iowa 주립대학의 Hillcrest 기숙사에서 여학생 운동선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두 풋볼 선수들은 팀에서 선수자격이 중지되었고 이후에 퇴출되었다. 범죄 수사 이후 두 선수 모두 형사 기소되었다. 한 선수는 심각한 상해를 입힐 고의에 의한 폭행죄로, 다른 한 선수에 대해선 단순 폭행죄로 인해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7년 10월 15일 수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부모들은 그들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믿었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 부재가 드러났고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했으며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에게 보복성 괴롭힘을 당하게 방치했다는 사실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08년 대학 이사회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외부 로펌(Stolar Partnership)을 고용하였다. 외부 로펌의 보고서(Stolar Report)는 대학의 일부 정책과 관행을 비난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두 명의 풋볼 선수 이름이 모두 기사에 등장하였다. 2007년 11월 13일 Press-Citizen은 대학에 Iowa의 기록물 공개법에 따른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Iowa Code § 22.2(1)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공공 문서를 조사, 열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¹⁾ 이 요청은 이번 사건을 포함한 모든 성폭행 혹은 성폭행 미수에 대한 보고서, 대학 관계자들의 성폭행 등에 관한 보고서, 2007년 10월 1일에 발생한 이번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비슷한 사건들에 관한 기록 등의 공개를 포함했다.

대학은 처음엔 다른 모든 답변서류는 Iowa Code §

22.7(1)에 의거하여 공개로부터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18페이지의 문서만 공개하였다(§ 22.7(1)은 학교 법이나 교육기관을 위하여 혹은 이들에 의해서 제작, 수집, 조합, 유지되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 기록은 정보 공개로부터 보호된다고 규정한다). 2008년 1월 4일, Press-Citizen은 지방법원에 기록물 공개법의 사법 집행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2.10는 이 법의 사법 집행을 규정한다).

소를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Press-Citizen은 강제 제출 명령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청구는 대학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서류들에 대한 본 인덱스(Vaughn index)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한다.²⁾ 또한 필요한 부분에서는 학생의 개인 신상정보가 식별되지 않게 편집된 문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대학은 FERPA를 비롯한 여러 이유를 들어 강제 제출 명령 청구를 거부했다. 2008년 8월 7일 지방법원은 Press-Citizen의 강제요구를 받아들였다. 대학은 약 950 페이지의 추가 서류를 Press-Citizen에 공개하였고, 공개된 문서 및 2,000페이지가 넘는 공개되지 않은 서류를 포함한 약 3,000페이지 상당의 문서들에 관한 본 인덱스를 제출했고, 그 약 3,000페이지 상당의 문서들을 판사 단독 비밀 심리를 위해 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판사의 단독 비밀 심리 후, 지방법원은 2009년 8월 31일 또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대학의 문서를 다섯 종류로 나누었다.

종류 1: 대학이 이미 편집없이 공개한 문서

종류 2: 대학이 편집하여 이미 공개한 문서

종류 3: 기밀 보호 대상이 아니며 편집 없이 공개되

1) 논의의 편의를 위해 2011년 버전 § 22를 적용한다. 사건의 계류 중 § 22는 이 사건에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는 없었다.

2) 본 인덱스(Vaughn index)는 Vaughn v. Rosen 판례에서 유래하였다. D.C. 연방고등법원은 정보자유법(Federal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거한 이 판례에서 정부가 공개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하고 있는 서류들의 설명 인덱스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Press-Citizen이 지적한 바와 같이 Iowa의 기록물 공개법을 적용한 판례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Public Records v. Des Moines Register & Tribune, Co.에서 학교(school district)이 비슷한 인덱스를 작성하기도 했다.

어야 할 문서

종류 4: 학생의 이름, 부모의 이름, 학생의 이메일 주소, 기숙사 방 번호를 포함한 주소 등의 학생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적절히 편집하여 공개해야 할 문서

종류 5: FERPA, 기록물 공개법 § 22.7,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 등에 의거하여 공개대상이 아닌 문서

지방법원의 8월 31일 명령은 대학이 30일 내에 종류 3의 문서를 편집 없이 공개하고 종류 4의 문서를 편집 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2009년 10월 5일, 지방법원은 8월 31일의 명령을 포함한 최종 명령을 내려 대학에 위 문서들의 공개를 재지시하였고, Iowa Code § 22.10(3)(c)에 의거하여 Press-Citizen에 \$30,500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것도 명했다. 대학은 항소심의 결정 전까지 지방법원의 명령에 대한 이행 보류를 요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락하였다. 대학은 지방법원이 일부 종류 3의 문서와 모든 종류 4의 문서를 공개 명령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본 법원에 항소하였다.³⁾

II. 검토의 기준

본 법원은 지방법원의 Iowa 주법 22장과 FERPA에 대한 법리 해석의 오류를 검토한다. 우리는 지방법원의 법조문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이 법조문을 새로이 해석한다.

III. 분석

A. Iowa의 기록물 공개법

일반적으로 Iowa의 기록물 공개법("Examination of Public Records" 이나 "Iowa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라고 불리기도 함)은 주(州)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기록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City of Riverdale v. Diercks 판례는 Iowa 주법 22장을 "우리 주의 정보 자유법"이라 칭했다. 이 법은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자신의 의사 결정 행위를 대중에게 숨기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본 법원은 기록물 공개법이 "개방과 공개의 추정"을 규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University of Iowa는 주립대학으로 확연히 기록물 공개법의 규제 대상이다. 본 법원은 주립대학에 의해 모금활동을 하도록 위임된 사립회사역시 이 법의 규제대상이라 결정한 바 있다(Gannon v. Bd. of Regents에서 Iowa State University와 이의 사립 재단이 기록물 공개법의 규제 대상이라 결정했다).

기록물 공개법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면제대상들도 규정한다(Iowa Code § 22.7는 "다음 공공문서는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적법한 기록 관리인이나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허가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밀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64개의 예외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여기 규정된 예외가 이 소송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대학의 유일한 주장은 연방법 FERPA가 종류 3과 종류 4의 문서를 기밀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B. FERPA

국회는 자신의 지출능력 하에 학생교육기록의 입수와 공개에 관한 요건을 연방지원금의 지원 조건으로 만들고자 1974년 FERPA를 제정하였다. FERPA는

3) 대학은 종류 3의 문서 중 133, 140-43, 202-03, 756-60, 835, 1009, 1230, 1479, 1488-89, 1814, 1869-70, 1878, 1878-88, 1973, 1988-89, 1993-95, 2031, 2043-44, 2055, 2062, 2063, 2217, 2234, 2251-56에 해당하는 문서의 공개를 항소하였고 이를 "항소된 종류 3"이라 부르기로 한다.

교육부 장관(Secretary of Education)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공립 혹은 사립 교육기관이나 시설에 연방지원금 제공을 중단할 수 있게 한다. 이 법 § 1232g(b)(1)는 “학생의 교육기록(혹은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기록)을 학부모의 서면에 의한 허가 없이 개인, 기관, 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는 정책 혹은 관행을 둔 교육기관이나 시설에서 모든 적용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지원금도 제공되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 법 § 1232g(b)(2)는 “학부모의 서면에 의한 허가가 없는 한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을 공개, 제공하는 정책 혹은 관행을 둔 모든 교육기관이나 시설에서 모든 적용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지원금도 제공되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는 FERPA를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중 본 소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34 C.F.R. § 99.3을 “교육기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교육기록”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말한다.

(1) 학생과 직접적 연관이 있고;
(2) 교육기관이나 시설, 혹은 교육기관이나 시설을 위해 일하는 단체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

(b) “교육기록”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포함하지 않는다.

(1) 기록자의 단독 소유 하에 있고, 개인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만 사용되며, 기록자를 잠시 대체하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 열람되지 않는 기록

(2) 교육기관이나 시설 하의 경찰 등 법 집행 기구의 기록

(3) (i) 교육기관이나 시설에 고용된 직원에 관한 기록으로

(A) 정상적 운영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B) 개인의 직원으로서의 능력에만 연관되며

(C) 다른 어떤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기록

같은 규칙은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다음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학생의 이름

(b) 학생의 부모나 다른 가족의 이름

(c) 학생이나 학생 가족의 주소

(d) 사회보장 번호, 학생 번호, 생체 측정 기록 등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e) 학생의 생년월일, 출생 장소, 어머니의 결혼 전 성 등 비직접적 신분 확인 정보

(f) 단독으로 혹은 조합으로 특정 학생과 관계되거나 연관될 수 있어, 관련 정황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이성 분별이 있는 학교 관계자로 하여금 학생을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식별할 수 있게 할 다른 정보

(g) 교육기관이나 시설이 교육기록에 관련된 학생의 개인 신상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요청한 자료

대학은 항소된 종류 3과 종류 4의 문서가 위에서의 정의에 미루어보아 공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본 법에 대한 해석에 의하면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이 담긴 “교육기록”은 공개되어선 안 된다. 또한, 편집 후 혹은 편집 전의 문서에 학생의 이름이나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학생의 신분이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규칙은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학생의 신분정보를 알게 될 것이거나 혹은 이성 분별이 있는 사람이 학생을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식별할 수 있게 될 경우 그 공개를 금지한다. 쉽게 말하면 대학은 FERPA에 의하면 Press-Citizen이나 학생 단체가 교육기록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생의 신분을 알게 될 경우에는 편집된 상태에서의 기록이라도 그 공개가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본 항소에서, 우리는 항소된 종류 3과 종류 4의 문서가 FERPA에서 말하는 “교육기록”이라고 간주한다.⁴⁾ Press-Citizen은 비록 편집 후에라도 이 문서가 공개 되면 문서가 가리키는 학생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곤 인정한다.⁵⁾ 하지만 Press-Citizen은 FERPA는 단순한 자금지원법으로 기록물 공개법에 의해 공개가 필요한 문서의 공개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결국 Press-Citizen은 FERPA가 기록의 편집을 허가하는 반면, 기록 공개의 보류는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 불일치 문제에 대해 논하겠다.

C. FERPA와 Open Records Act의 상호관계

대학은 FERPA와 Open Records Act의 상호관계는 단순한 연방법 우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U.S. Const. art. VI(“미 연방의 법이 이 나라의 최고 법이다”라고 규정함)대학에 따르면 연방법이 기밀을 요구하는 문서에 대해 Iowa 주법이 공개를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Press-Citizen은 FERPA가 실제 법이 아닌 단순한 자금지원법으로 명확하고 직접적인 기록물 공개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논의는 다른 관할법원의 판례에서도 다루어졌다. 일부 법원은 FERPA가 교육기록의 공개를 금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Bauer v. Kincaid(FERPA는 교육기록의 공개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 이는 교육기록의 공개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법일 뿐이다);

WFTV, Inc. v. Sch. Bd. of Seminole(FERPA는 교육기록의 공개를 금지하지 않는다. FERPA는 만약 교육기관이나 시설이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 정보 보호, 공개, 열람 권리에 반하는 정책이나 관행이 있으면 교육기록에 대한 공공의 열람에 관한 그 정책이나 관행에 기반해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적용 가능한 연방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뿐이다); Kirwan v. The Diamondback(The Diamondback의 다른 주장은 연방법 FERPA가 법의 보호를 받는 교육기록의 공개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교육기록을 공개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둔 교육기관이나 시설에 연방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이 유일한 강제제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미 이 소에 해당되는 기록이 교육기록이 아니라 결정하였기 때문에 The Diamondback의 이 주장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겠다)

FERPA 규칙 34 C.F.R. § 99.61는 “주나 지방법에 의해 교육기관이 FERPA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 규칙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FERPA는 주법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근거라 주장할 수 있다.⁶⁾

한편, 다른 법원들은 FERPA를 주 당국에 구속력을 미치는 실체법으로 간주하고 FERPA 규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부여하였다. Sherry v. Radnor Twp. Sch. Dist.(공개 요청된 기록의 공개가 FERPA에 의해 금지됨을 결정) United States v. Miami University 판례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FERPA에 의해 보호되는 교육기록의 공개를 금지하는 유지 명령을 확인하였

4) Press-Citizen은 각주(footnote)에서, 그리고 법정 참고인인 제 삼자들은 좀 더 긴 내용을 통해 일부 문서는 “경찰 등 법 집행기구” 문서일수 있다고 주장한다. 20 U.S.C. § 1232g(a)(4)(B) (“교육기록”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교육기관이나 시설 하의 경찰 등 법 집행 기구의 기록) 하지만 이 주장은 지방법원에서 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본 항소에서 이 주장을 고려하지 않겠다. DeVoss v. State (지방법원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 고려할 것 거부함) 여하튼, 그 주장을 고려할 충분한 기록이 없다.

5) 어떤 소송 당사자도 지방법원의 판사 단독 비밀 심리의 정확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 본 항소에 제기된 문제는 단순한 법률문제일 뿐이다.

6) 한 학군이 South Dakota 주법이 정보 공개를 요한다고 주장하며 주 외에서의 특별 교육 서비스에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지를 공개하자, 교육부는 “FERPA는 이와 상반되는 주법을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조언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군이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할 때 FERPA를 위반하게 되며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 사건에 대한 다른 소송에서 연방법원은 학군에 약식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학군은 연방법이 명백히 대체하지 않은 주법을 따른 이유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없다”고 논증하였다(Maynard). 하지만, 교육부의 이 소송에서의 조언은 United States v. Miami University 판례에서의 교육부 입장과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Miami University 판례에서 교육부는 FERPA가 Ohio 주법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교육기록의 공개를 금하는 입장을 취했다.

다. 법원은 FERPA 위반에 따른 제재가 연방지원금의 중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논증하였다. 오히려, 일단 지원금을 받으면 학교가 동의 없이 교육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FERPA로 인해 실제로 금지된다는 것이다. *Rim of the World Unified Sch. Dist. v. Super. Ct.*(FERPA가 학생 제적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California 주법보다 상위법이다); *Unincorporated Operating Div. of Ind. Newspapers, Inc. v. Trs. of Ind. Univ.*(FERPA는 교육기록을 기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법이다)

간략히 말해서, 위의 법원이 말한 것처럼 “주와 연방 법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다른 입장들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본 법원이 이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Iowa의 기록물 공개법이 이미 FERPA의 상위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물 공개법 § 22.9는 말하길:

본 법의 규정이 이 주(州)의 기관에 반드시 주어질 때 연방정부의 지원금, 서비스, 중요 정보의 차단을 야기시킨다고 판단되면, 해당 규정은 지원금, 서비스, 중요 정보의 거부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적용이 중단되어야 한다.

§ 17A.2(1)에서의 기관은 위 문단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금, 서비스, 중요 정보의 차단을 막기 위해 적용이 중지되는 본 법의 조항의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 22.9의 첫 문단은 기록물 공개법의 규정이 연방정부의 지원금 중단을 야기시킬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중지시킨다. 이 문단은 FERPA가 실체법이 아니라는 *Press-Citizen*의 주장이 틀림을 보여준다. § 22.9가 FERPA에 실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기록이 개인 신분이 식별될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할 때, 만약 대학이 기록물 공개법 § 22.2(1)에 의거하여 교육기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대학은 기밀 교육문서의 공개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처벌은 연방지원금

의 중단이다. 20 U.S.C. §§ 1232c, 1234c(지원금 수혜자가 지원금에 관한 법적 요건을 크게 충족시키지 못할 때 지원금의 중단을 허가함); § 1232g(f)(장관은 본 법의 이행과 본 법의 위반을 처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지원의 중단은 장관이 본 법의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본법의 자발적 준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시만 가능하다)

*Press-Citizen*은 대학이 문서의 공개가 § 22의 첫 문단에서 규정하는 지원금 중단을 “반드시” 야기시킬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대응한다. 법원은 이 주장이 법조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믿는다. § 22.9는 대학이 연방지원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다. 대학은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 대학은 상당한 연방지원금을 받고 있다. *University of Iowa, General Education Fund, FY 2011-Use of New Revenues and Reallocations*(대학은 2009년 회계년도 동안 \$258,999,082의 총 연방지원금을 받음) 법 조문은 지원금 중단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한편, *Press-Citizen*은 본 소의 한 번의 자료 공개가 “정책이나 관행”에 달하지는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Gonzaga Univ.* 153 L.Ed.2d at 324(FERPA의 비공개 규정은 제도화된 정책이나 관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각각의 사례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총체적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Achman v. Chisago Lakes Indep. Sch. Dist.* No. 2144(한 번의 위반은 학군이 FERPA를 정책이나 관행적으로 위반했다는 결말을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이 주장의 한가지 문제는 정보 제공이 Iowa 법원에 의해 허가 되면 그 정보제공은 우연적이거나 의도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는 일종의 선례가 된다는 것이다. 즉, 일종의 “정책이나 관행”이 성립된다.⁷⁾

*Press-Citizen*의 주장의 더 큰 문제는 § 22.9이 총체적 상황에 의거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 22.9는

한 특정 정보 공개가 지원금의 중단을 야기시킬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한 규정(이를 테면, § 22.2(1)의 공공 기록이 열람가능 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지원 중단을 야기시킬 것인지를 묻는다. 따라서 규정이 기관에 연방지원금 중단을 야기시키지는지를 판단하려면, 규정이 적용되는 한 번의 사례가 아닌 규정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 22.9는 “주(州)의 기관”인 University of Iowa의 교육기록에 계속해서 적용되는 § 22.2(1) 같은 규정이 지원금의 중단을 야기시키면 이의 적용을 중단토록 규정하는 것이다.⁸⁾

물론, 연방 정부가 결국에는 University of Iowa에 지원금 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 22.9를 적용함에 있어 Washington D.C.에서 행하는 그런 정책 결정에 대한 예견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owa Code § 4.4(3)(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의도되었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 22.9의 첫 문단은 § 22.2(1) 같은 Open Records Act의 규정이(규정의 한 번의 적용이 아닌) 주(州) 기관의 연방 재정 지원 중단을 야기시킬 것처럼 보일 때 이 적용을 중단토록 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Press-Citizen은 § 22.9의 두 번째 문단에 의존하여 대학이 이 문단에서 말하는 “규칙”을 채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첫 번째 문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⁹⁾ 기록물 공개법이 1967년 처음 제정되었을 때, § 22.9의 첫 문단만 포함되어 있었고, 두 번째 문단은 1984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다.

Press-Citizen의 위 주장의 문제점은 두 가지 개별적 메커니즘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첫 문단은

모든 개인에 적용되는 조항이 수동태로(“적용이 중단되어야 한다”) 적혀있다. 따라서 첫 문단은 “본 법의 규정이 이 주(州)의 기관에 반드시 주어질 미 연방정부의 지원금, 서비스, 중요 정보의 차단을 야기”시킨다는 “판단”이 되면, “기관”과 상관없이 그 규정의 적용을 막고 있다. 반면, 두 번째 문단은 “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첫 문단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지원금, 서비스, 중요 정보의 거부를 막기 위해 적용이 중지되어야 하는 본 법의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S.F. 2294 Explanation, 70th G.A., Reg. Sess. (§ 8은 주(州) 기관으로 하여금 연방 지원금 조건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 22.9 어디에서도 입법부가 기관이 두 번째 문단에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문단이 효력이 없게 되기를 의도했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첫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문단이 17년 후 제정될 때까지 독립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요컨대, 1984년도의 개정은 기존의 첫 문단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기록물 공개법은 FERPA의 기밀 유지 의무를 인정, 포함하고 있다.

D. FERPA와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

FERPA가 적용된다고 가정 했을 때, 다음 문제는 FERPA의 의무가 문서의 편집만으로 준수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있어선 문서 전체의 공개 중지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학은 교육부의 규칙에 의하면 학생의 이름 등 개인 정보를 편집해 내기도 열람자가 기록이 가리키는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7) FERPA에 따르면 “정책이나 관행”이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것이어야 하지만 대학의 “자발적인” 관행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8) 다시 말하자면, § 22.9는 특정 공개가 지원금 중단을 발생시키는지가 아닌, 주(州) 기관에 적용되는 기록물 공개법이 지원금 중단을 발생시키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소 당사자도 Iowa 주립대학이 § 22.9와 § 17A.2에서 규정하는 주(州) 기관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Papadakis v. Iowa State Univ. of Sci. & Tech.(대학의 교수진 연봉 및 복리후생 지급 중단이 § 17A.2(2)에서 말하는 “주(州) 기관” 활동임을 판결)

9) 대학은 Iowa 행정법(Administrative Code) 규정 681-17.13(2)(d)이 그와 같은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이 규칙은:

다음의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은 대중의 검열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는 종류에 따라 나열되어 있다.

d. 학생기록(20 U.S.C. 1232g로 개정된 FERPA (1974)와 Iowa 주법 section 22.7)

라고 규정한다. 본 법원이 § 22.9 둘째 문단의 “규칙”이 첫째 문단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결론지었으므로 대학의 주장을 검토하지는 않겠다.

있을 때 그런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의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4 C.F.R. § 99.3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을 “단독으로 혹은 조합으로 특정 학생이 연관되거나 연관될 수 있어, 관련 정황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는 이성 분별이 있는 학교 집단 관계자로 하여금 학생을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식별 할 수 있게 할 다른 정보”로 정의) 대학은 2007년 10월 14일의 악명 높은 사건을 고려할 때, 사건 관련된 기록에 어떤 편집을 하더라도,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의 신상이 신문에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Press-Citizen은 기록물 공개법에 의하면 기록의 공개 열람은 “허가 혹은 불허가” 되어야 한다고 대응한다. 기록의 공개의 정도가 그 공개를 청구한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Ne. Council on Substance Abuse, Inc. v. Iowa Dep't of Pub. Health*, (기록물 공개법에 의거한 기록공개는 기록 공개 청구자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소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음) 그러나 이 주장은 § 22.9를 통해 Iowa 주법에 포함된 연방법 FERPA가 이 사안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망각하고 있다.

또한, Press-Citizen은 교육부의 관련 규칙이 이 소가 제기된 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기존의 판례법과 다르므로 본 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Press-Citizen이 말하는 바와 같이,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의 정의에 관한 항목 (f)와 (g)는 2008년 12월 9일 최종 규칙으로 공인되었고 2009년 1월 9일 효력을 발휘하였다. 소송은 2008년 1월 4일 처음 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지방법원은 종류 3, 종류 4에 대한 결정을 2009년 8월 31일 내렸다.

하지만 연방법에 의하면 “법원은 부당한 처사가 야기되거나, 법조문에 명시되거나, 입법 과정 및 배경 자료가 다른 결말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판결을 내릴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사건의

법적 효력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존재했던 법에 따른 판단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원칙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 연방 최고법원은 새로 바뀐 규칙을 계속 중인 소송에 적용 시, 당사자가 사건 당시 가지고 있던 권리가 침해되는가, 당사자의 행동에 의한 책임이 커지는가, 혹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가를 물어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새로운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의 정의는 이 소급적용에 대한 연방법 기준을 쉽게 통과한다. 여기에 중요한 “사건”은 항소된 종류 3과 종류 4에 해당하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의 결정이다. 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계속되었고, 법이 변경되었을 때도 계속 진행중이었다. 우리가 새 규칙을 적용할 때 편견이 될 만한 기존법에 대한 신뢰는 없었다.

또한, 기존의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에 관한 정의는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기존법은 “학생의 신상이 쉽게 추적 가능한 기록”의 공개를 금지하였다. 교육부는 “기존 법조문이 특정성과 명확성이 없어” 새 법조문으로 대체하였다. 교육부는 또한 “쉽게 추적 가능”한 기준이 너무 낮은 수준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즉, 정보가 개인 신상을 “쉽게” 추정 가능케 할 때만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존의 법문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하여 기록이 지칭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교육기록이 공개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만약 공개된 기록에 의해서, 또는 다른 공개된 정보에 의해서, 이름, 신분 번호, 사건의 날짜와 시간 등을 편집해 내는 것이 징계절차에 관여한 증인, 피해자 등의 학생의 신원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FERPA는 교육 기관이나 시설이 그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교육부가 규칙개정제안 및 공지를 통해 설명한 것과 같이 “제안된 규칙은 위 안내문이 규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

라서, 2009년 1월 개정의 의도는 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Press-Citizen은 또한 대학이 문서를 편집하지 않고 문서의 공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이란 용어에 대한 법적 가능한 해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20 U.S.C. § 232g(b)(1)은 부모의 허락 없이 교육기록(혹은 “개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을 공개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둔 기관의 연방지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 문장은 최소한 편집이 학생의 신상보호에 충분하지 않을 때 전체 문서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적용할 법조문의 뜻이 애매할 때, 우리는 합리적이고 허용된 범위 내의 담당 기관(이 경우, 교육부)의 해석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Press-Citizen은 신문사가 관련 두 학생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을 때 이름을 편집해낸 징계기록의 공개를 명한 Montana 최고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 판례는 2009년 FERPA 개정 이전에 결정되었다. 최소한 이 판례에서의 학군은 “편집이 연계된 학생의 신상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때 그 문서의 공개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본 소에서 대학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또한, Press-Citizen은 일단 개인 신상 정보가 편집되면, 기록이 학생에 직접 연관되지 않으므로, “교육기록”의 정의 상, 그 기록은 더 이상 교육기록이 아니다”라는 Wisconsin 최고법원의 방론을 예로 들었다. 이 언급 역시 2009년 개정 전이었으며 이 판례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법원은 현재의 교육부 규칙에 의거하여, 편집 후이라도 관련 학생이나 학생들의 신원을 정보 공개 청구자가 알게 될 수 있다면 문서 전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바이다. Press-Citizen은 이 결론을 비판한다. Press-Citizen에 의하면: “대학의 입장은 FERPA가 유연하게 적용되어, 가장 악명

높은 범죄혐의나 범죄에 가장 강력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는 미미한 사건엔 그 적용이 보류될 수 있다는 이상한 주장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이런 FERPA의 적용 성격은 이 법의 전체적 목표가 학생의 신원 보호라는 의회와 교육부의 앞선 판단에 의한 것이다. 본 법원은 의회와 교육부의 이런 판단을 재검토할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

E. 추가 쟁점

Press-Citizen은 교육기록이 법원의 명령이나 적법하게 발효된 소환장을 따르기 위해서 공개되어야 할 때, 학부모와 학생이 그 명령이나 소환장에 대해 교육기관의 사전 공지를 받는다면, FERPA가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한다고 제안한다. 20 U.S.C. § 1232g(b)(2)(B); 34 C.F.R. 99.31(a)(9)(i)(교육기록이 법원의 명령이나 적법하게 발효된 소환장을 따르기 위해서 공개될 수 있다고 암시) 이 예외는 기존 판례에 적용되어왔다. *Ragusa v. Malverne Union Free Sch. Dist.* (차별을 다루는 소송에서 관련 교육 문서의 제출을 명령한다); *Catrone v. Miles* (의료 사고 소송에서 교육기록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법에 의해 보호되는 교육기록은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개를 허락한다); *Gaumond v. Trinity Repertory Co.* (FERPA는 개인 상해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 교육기록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교육기록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예외가 당사자가 해당 교육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법원에 따로 소를 제기할 때 마다 적용된다는 건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소를 제기할 때 마다 FERPA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¹⁰⁾

Press-Citizen은 또한 대학의 입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Press-Citizen이 말하는 바와 같이, 대학 총장, 운동부 책임자, 그리고 풋볼 코치를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은 성폭행 혐의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게다가 학교 이사회에 의해 발표된 72 페이지의 Stolar Report는 대학의 사건 대응에 대한 자세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으며 “풋볼 선수 #1,” “풋볼 선수 #2,” “학생 선수”와 같은 언급으로 가득 차 있다.

법원은 대학에게 완전한 일관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학자들은 이미 FERPA가 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위, 즉 학교에 유리한 상황에서선 학생의 정보를 공개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전략적 행위를 허용한다고 비난해 왔다. Matthew R. Salzwedel & Jon Ericson, *Cleaning Up Buckley: How the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Shields Academic Corruption in College Athletics*(대학들의 선택적 공개를 언급) 그룹에도 불구하고, Press-Citizen은 대학의 비밀관성에 대해 특별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Press-Citizen의 이 주장에 대한 준비 서류는 어떤 법적 권한도 인용하지 않고 있고, 구술 주장 당시에는 대학이 공개 거부 권리를 기권했다는 주장을 스스로 포기했다. City of Riverdale(지자체 당국이 기록물 공개법 § 22.7(50)에서의 면제를 스스로 기권했다고 결정) 이와 같은 이유로 Press-Citizen의 비밀관성 주장은 FERPA의 본 사안에서의 효력을 따지는 법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송 참가자들은 공적인 서류의 공개가 공개 청구

자의 지식에 따라 다시 비공개화 될 수 있다면 연방 헌법과 주의 헌법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주장이 소송참가자들의 준비 서류에서 길게 논의되어 있지만 이는 지방법원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Press-Citizen에 의해 주장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을 거부한다. *Mueller v. St. Ansgar State Bank*(Iowa 주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주장만 판단할 수 있다); *Rants v. Vilsack*(지방법원에서 제기되지 않은 소송 참가자의 주장을 판단 거부한다)

IV. 결론

항소된 종류 3, 종류 4 문서의 제공을 명령한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한다. 대학은 지방법원 판결의 다른 부분, 특히 변호사 비용지급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부분의 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한다.¹⁰⁾ 본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지방 법원의 추가 절차를 명한다.

지방법원의 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한다.

Appel, Wiggins, Hecht 판사를 제외한 모든 판사가 이 결정에 동의한다.

Appel 판사(반대의견) :

법원의 판단에 정중히 반대하는 바이다. FERPA은 연방지원금이 “학생의 교육기록 (혹은 개인 신상이 확 인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기록)을 학부모의 서면에 의한 허가 없이 개인, 기관, 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허

10) 법원들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Ragusa*(FERPA에 대한 법원명령 예외는 무조건 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정보 공개를 허용 하기 전, 정보 공개 요청자는 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학생 개인의 프라이버시 훼손보다 큼을 입증해야 한다); *Zaal v. State*.(FERPA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지방교육체제나 교육기관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은, 해당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 요청되었을 때 마다 학생 개인이 자신의 교육기록에 가지는 프라이버시나 기밀에 대한 이해관계가 무시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쉽게 말해, 법원 명령 예외는 교육기관이 언제 교육 문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뿐이며(법원 명령이 있을 때), 법원이 언제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알려 주지는 않는다(법원이 항상 공개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 Press-Citizen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학이 항소의 대상이 아닌 종류 3의 문서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대학이 아직까지 해당 서류를 제공 하지 않았으면, 이를 속히 제공해야 한다.

락하는 정책 혹은 관행을 가진 교육기관이나 시설”에 제공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州)의 정보 공개법에 의거한 법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정책 혹은 관행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의견은 “정책 혹은 관행”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이는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정책 혹은 관행을 칭함을 망각하고 있다. 사실, 다수의 의견은 법조문에 있는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단어들을 삭제하고 새 법을 제정하는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FERPA와 기록물 공개법에 명시된 법조문에 따라, 새 법을 쓰고 있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연방법이 우선 법임은 자명하지만, 현 사안에서 FERPA와 기록물 공개법 사이의 모순점이 있다는 다수의 의견은 틀렸다. 따라서 본 소송의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구함이 옳다.

Wiggins, Hecht 판사는 이 반대의견에 동의한다.

[미국판례 2]

**어떠한 청구로부터도 제작사는 면책된다는
서류에 사인을 했더라도 외견상 일리가 있는
사유로 인한 소제기에 대해 기각요청을 할 순 없다.**

〈판결요지〉

가. Sahoury는 비디오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혹은 부주의하게 성을 뺀 이름만 ‘모유수유 안내’(Breastfeeding Help)에 사용될 것이며, 비디오는 Parents® 웹사이트나 케이블TV에서만 보여질 것이라 진술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진술을 믿고 비디오 촬영에 참여했고 모유수유를 시범 보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면책 허가 서류를 읽지 않았음을 인정하지만, 이 서류가 제작자가 이미 자신에게 진술한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이라 믿고 서명했다고 말한다. 소장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원고는 사기 유도, 형평상 사기, 부주의한 허위 진술 등에 관한 외견상 일리가 있는 청구권에 관한 충분한 사실을 주장했다.

나. 피고들은 “이 문서에 의도된 서명자의 영상, 목소리, 이름의 사용에 관해 서명자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권을 포함한 어떠한 청구권으로부터 피고들을 면책한다”라고 기술된 면책 허가 서류를 원고가 서명함으로써 이 소송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유효한 반론이 되겠지만, Sahoury는 외견상 일리 있는 허위 유도 청구권을 소장에 기술했고, 이 청구권이 받아들여지면 면책 허가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서명한 면책 허가 서류가 Sahoury와 A.S.의 이름과 녹화물 등의 사용을 허락하므로 자신들의 행동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적으로 계약 위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진술한다. 면책 허가 서류는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이름”이 성과 이름을 동시에 지칭한다고 정의하지 않는다. 이 계약 위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약서 상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지만 이는 소장 기술의 분석 기준인 “외견상 일리 있는 계약 위반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가”와는 초점을 달리한다. 소장에서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소장은 원고가 손해배상 받을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뉴저지 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District of New Jersey)

원고: Maryann Sahoury (개인 및 자녀(A,S)의
보호자 자격)

피고: Meredith Corporation,

Meredith Video Studios, Parent TV

사건번호: Civ. Action No. 11-5180 (KSH)

판결선고: 2012. 8. 2.

Hayden, J. 판사 :

이 판결은 피고 Meredith Corporation, Meredith Video Studios, Parent TV의 원고 소송각하요청에 관한 것이다. 원고 Maryann Sahoury는 피고들에 의해 촬영, 제작, 보급된 교육용 비디오에 참여한 뒤 그녀와 그녀의 딸 A.S.를 대표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교육용 비디오는 인터넷에 게시되었고, 그 후에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이를 “도용”해 Sahoury와 A.S.의 이름을 따 제목이 정해진 음란 비디오를 만들었다. 아래에 설명된 이유에 근거하여 피고들의 각하요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일부 거절한다.

I. 사실 배경

Meredith Corporation(이하 「Meredith」로 한다)은 책과 잡지 출판, 텔레비전 방송, 통합 마케팅, 쌍방향 미디어 등을 다루는 미디어 마케팅 회사이다. Meredith가 가진 상표 중에 하나인 Parents®은 Parents TV를 운영한다. Meredith Video Studios는 Meredith에 의해 소유, 운영되는 비디오 개발, 제작, 다매체 보급 서비스 회사이다. Parents TV는 Meredith Video Studios가 취급하는 매체 중 하나로 모바일이나 케이블 TV를 통해 제공한다.

2009년,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Sahoury는 모유수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위해 수유 전문가 Shari Criso를 고용했다. Sahoury는 Criso의 도움으로 딸 A.S.가 태어난 후 수유를 시작했다. Parent TV가 Criso에게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용 비디오에 출연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Criso는 Sahoury와 그녀의 갓난아기에게 “첫 아기 엄마가 어떻게 수유에 관한 두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지켜 본 산중인”으로서 출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Sahoury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이 모유수유를 하려는 다른 초보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깊다고 느껴 출연을 허락하였다.

2010년 1월 8일, Sahoury와 생 후 한 달이었던 A.S.는 ‘모유수유 안내(Breastfeeding Help)’란 제목의 비디오를 촬영하러 Criso의 집에 갔다. 촬영이 시작되기 전, Sahoury와 Criso는 Parent TV의 촬영, 진행 과정, 비디오 사용 의도에 관해 제작자에게 질문했다. Sahoury는 “비디오 제작 담당자로부터 비디오는 음성이나 화면을 통해 Sahoury나 A.S.의 성 내지 이름이 모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유수유 비디오는 교육용이나 설명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비디오는 웹사이트나 케이블 TV에서 보여 질 것이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Sahoury는 촬영에 응했다.

촬영 중 Sahoury는 그녀의 딸에게 모유수유하는

것을 배우던 경험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모유수유 기술을 시범하였다. 그 직후, 역시 Criso의 집에서 같은 제작자와 촬영 기사가 다른 아기 엄마를 촬영했다. 촬영이 끝나고 Sahoury가 A.S.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 제작자는 그녀에게 부엌 조리대에 있는 서류에 반드시 서명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둘러 떠나던 Sahoury는 서류가 제작자가 말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 믿고 그 서류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

후에 Sahoury는 자신이 서명한 것이 “Authorization & Full Release(이하「면책 허가 서류」로 한다)”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 서류는 “이 문서에 의도된 서명자의 영상, 목소리, 이름의 사용에 관해 서명자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권을 포함한 어떠한 청구권으로부터” 피고들을 면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서류는 “피고들이 서명인의 어떤 필름, 비디오테이프, 테이프, 음성 녹음, 이미지, 사진, 네거티브, 재현, 그리고/또는 다른 영상이나 목소리(이하「녹화물 등」으로 한다)등의 저작권 보호, 사용, 제출, 전파, 방영, 게재, 게재허가, 게재를 허가할 것을 허락”하고 “서명인은 녹화물 등에서 서명인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모유수유 안내’ 동영상 촬영하고 수 개월이 지나도록 Sahoury는 언제 비디오가 방영될지 전해 듣지 못했다. 과거 홍보 및 PR에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는 Sahoury는 종종 자신의 이름을 Google에서 검색해 보았다. 2010년 7월, 그녀는 자신의 성과 이름을 Google에서 검색하고 아연실색했다. 검색 결과에 자신의 이름이 삽입된 수개의 음란 웹사이트와 비디오 링크들이 나타났다. A.S.의 성명 검색 결과 역시 음란물 링크들이 나타났다. 더 많은 조사 후에 그녀는 그 링크들이 ‘모유수유 안내’ 영상과 자신과 비슷한 외모와 체격의 여자가 출연하는 음란영상을 조합된 음란비디오임을 알게 되었다. Sahoury는 ‘모유수유 안내’ 동영상이 자신의 성과 이름 및 딸의 이름을 사용한

것을 음란비디오를 통해 깨달았다. 그녀는 소장을 통해 자신의 성명 사용은 비디오 촬영 전에 자신에게 설명한 것과 다르며 피고들이 자신과 자신의 딸의 이름을 해당 장면에 삽입하지 않았다면 음란 비디오물 제작자들이 이를 모유수유 영상과 음란비디오에 연계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장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아기 엄마들과 아기들의 이름, 특히 원고와 같은 장소, 같은 제작자, 같은 촬영기사와 ‘모유수유 안내’ 영상을 촬영한 다른 아기 엄마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Sahoury는 ‘모유수유 안내’ 비디오가 Parents® 웹사이트와 케이블 TV에서만 방영될 것이라 들은 것과 달리 YouTube에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원고는 피고들이 게시된 YouTube 영상을 제삼자가 내려 받지 못하도록 막는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Sahoury는 음란영상물과 그 링크를 발견한 직후 피고들과 Criso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자신과 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원고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음란영상물 사용자, 웹사이트와 링크를 찾아 신고하는데 썼다. 원고는 Criso의 도움으로 Nizard라는 사람이 음란비디오의 원본을 만든 것을 알아냈다.

처음에는 피고들도 Sahoury를 도와 Nizard를 찾고 음란영상물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지와 긴급함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 8월에 들어서 피고들의 의지는 사라졌고, 원고는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러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판 관리 회사(reputation management company)를 고용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평판 관리 회사는 원고에게 검색엔진에서 음란영상물보다 상위의 검색결과를 가져다 줄 긍정적 내용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모든 음란영상물과 링크를 인터넷에서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Sahoury와 A.S.를 음란영상물과 연계시키는 신규 링크와 비디오는 인터넷 상에 계속 재등장했다. Sahoury는 소장을 통해 자신이 수모, 심각한 정신적

중압감, 불안감, 공황 발작, 울음과 떨림, 분노감, 슬픔, 자신과 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무분별한 집착을 겪어왔다고 주장한다.

II. 관할권

본 법원은 28 U.S.C. § 1332에 의한 복수의 주간 관할권 아래 본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실체법에 관해서는 주법을, 절차법에 관해서는 연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Gasperini v. Ctr. for Humanities*(Erie doctrine에 의해서 복수의 주간 관할권 아래 소를 맡는 연방 법원은 주 실체법과 연방 절차법을 적용한다)

III. 검토 기준

Fed.R.Civ.P. § 8(a)(2)에 따르면, 소장은 원고가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간결하고 명백한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소장은 충분한 사실적 사항을 통해 청구권이 외견상 일리가 있음을 밝혀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통해 피고들이 소장에서 주장된 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적 주장을 요하지 않지만 간소하게나마 “피고가 불법적으로 나를 해하였다”라는 정도의 기소는 요구한다.

소장에 있는 충분한 사실적 사항을 기술된 그대로 받아 들여졌을 때 원고가 외견상 일리가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나야만 피고의 청구권 기술 불충분으로 인한 소송각하요청(Fed.R.Civ.P. § 12(b)(6))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원은 이 절차적 소송에서 소장에 주장된 사실적 사항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지만 소장에 적힌 법적 결말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단적인 소송 구성요소의 단순한 나열은 이 절차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원고는 특별히 정해진 개연성을 보일 필요

는 없지만, 피고가 불법 행위를 하였다는 확률이 단순한 가능성 이상임을 보여야 한다. 이 소장에 의한 통지는 문맥 전후 관계가 중요한데, 소장에 있는 사실적 사항이 피고에게 Fed.R.Civ.P. § 8에서 요구하는 청구권 통지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충분 할 때엔 피고의 청구권 기술 불충분으로 인한 소송각하요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피고가 소송각하요청을 하였을 때 법원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한다. 첫째로, 법원은 소장의 각 주장에서 사실적 요소와 법적 요소를 구분해야 한다. 소장의 모든 사실적 요소를 사실로 간주하여 받아 들여야 하지만 법적 결말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둘째로, 법원은 주장된 사실이 원고가 외견상 일리가 있는 청구권이 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외견상 일리가 있음을 결정하는 것은 특정 전후 상황에 기인하며 법원의 경험과 일반 상식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소장은 단순히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는데 그쳐선 안되고 반드시 사실적시를 통해 그 자격이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Fed.R.Civ.P. § 12(b)는 소송각하요청에 관한 판단을 할 때 소장 이외의 사항이 고려되면 소송각하요청이 아닌 Fed.R.Civ.P. § 56에서의 약식판결 절차로 간주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3구 연방고등법원과 다른 연방고등법원은 법원이 소송각하요청을 약식판결 절차로 변환하지 않고 특정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법원은 소장의 근간이 되었거나 소장에 직접적으로 인용된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피고들은 ‘모유수유 안내’ 영상과 원고가 서명한 면책 허가 서류를 첨부하였다. 이 자료들은 Sahoury의 청구권의 기반이 되므로 소송각하요청을 약식판결 절차로 변환하지 않고 이들을 참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Sahoury 또한 Criso의 진술서와 ‘모유

수유 안내' 영상이 포함된 음란영상물을 제출했다. 하지만 소장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법원은 음란영상물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 이 음란영상물은 Sahoury의 청구권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에 관련될 뿐이다. Criso의 진술서는 소장의 내용보다 더 많은 사실을 담고 있고 소장에 담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증거가 되지만 동일한 이유로 이를 참고하지 않겠다.

IV. 분석

A. 소장은 사기적 허위진술, 부주의한 허위진술, 형평상 사기에 관한 청구권을 충분히 기술하고 있다.

소장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원고는 사기적 허위 진술, 형평상 사기, 부주의한 허위진술 등에 관한 외견상 일리가 있는 청구권에 관한 충분한 사실을 주장했다.

사기적 허위진술에 의한 청구권을 주장하려면, 원고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를 보여야 한다: (1) 현존하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에 관한 중요한 허위진술; (2) 그 사실이 거짓임에 대한 피고의 믿음 또는 지식; (3) 다른 사람들이 그 허위진술을 믿게 하려는 의도; (4) 다른 사람들의 허위진술에 대한 합리적 신뢰; (5) 이로 인한 손해들.

반면, 원고가 형평상 사기를 주장할 때에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만 충족시키면 된다: (1) 현존하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에 관한 중요한 허위진술; (2) 원고의 허위진술에 대한 합리적 의존; (3)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 다시 말해, 형평상 사기를 주장하기 위해선 원고는 피고의 '고의성', 즉, 피고가 자신이 허위진술 하는 사실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거짓이라고 믿었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원고가 부주의한 허위진술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려면 피고가 부주의하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고, 자신이 이를 합당하다고 믿고 그 결과로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하여야(허위 사실에 대한 '신뢰' 요소는 사기와 부주의 허위진술과 같다).

Sahoury는 비디오 제작자가 의도적이거나 부주의하게 성을 제외한 이름이 '모유수유 안내' 동영상에 사용될 것이며, 비디오는 Parents® 웹사이트나 케이블 TV에서만 보여질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원고는 이 말을 믿고 비디오 촬영에 참여했고 모유수유를 시범 보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면책 허가 서류를 읽지 않았음을 인정하지만, 이 서류가 제작자가 이미 자신에게 진술한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믿고 서명했다고 말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과 딸의 이름이 포함된 비디오를 YouTube에 게시함으로써 제삼자가 이를 다운 받아 음란영상과 모유수유 장면을 합성해 자신과 딸의 이름을 음란영상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이다.

위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원고가 청구권 자격이 있음이 입증된다. 첫째로, Fed.R.Civ.P. § 8(d)(2)-(3)은 원고가 양자택일의 대체적 형태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고들이 허위진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허위진술이 의도적이었는지 혹은 부주의에 의하였는지는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현 상황에서 소장에 제시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두 이론들 중 어떤 것도 가능하다. 또한, 사기를 주장할 때 원고는 사기를 둘러싼 자세한 상황을 진술해야 하지만, 악의, 고의, 지식 등 피고의 심리상태에 대한 다른 조건들은 진술할 필요가 없다. 원고는 이 필요조건을 충족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면책 허가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비디오 촬영에 참가하게 만

든 허위 진술의 자세한 상황을 주장하였고, 피고들이 진술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이를 믿을 것을 의도하고 진술하였음을 대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허위진술을 합리적으로 믿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권 기술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서명한 면책 허가 서류가 녹화물 등에서 원고와 원고의 딸의 이름을 사용하고 녹화물 등을 현재와 이후에 제작될 어떠한 매체에서라도 사용할 것을 허가하였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피고들은 기존에 구술로 설명된 내용이 계약문서와 상반되기 때문에 Sahoury가 피고들의 구술 설명을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현재의 소장 수준에서 주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Sahoury가 비디오 촬영이 끝난 뒤 서둘러 갓난 아기인 딸을 집으로 데려가려는 상황에서 면책 허가 서류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사건 진행 상황 자체만 보아도 그런 속결을 배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피고들은 또한 “이 문서에 의도된 서명자의 영상, 목소리, 이름의 사용에 관해 서명자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권을 포함한 어떠한 청구권으로부터 피고들을 면책한다”라고 기술된 면책 허가 서류를 원고가 서명함으로써 이 소송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유효한 반론이 되겠지만, Sahoury는 사기적 허위진술 등에 관한 외견상 일리가 있는 청구권을 소장에 기술했고, 이 청구권이 받아들여지면 면책 허가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피고들이 면책 허가 서류에 의존해 소송각하를 요구하는 것은 소장 기술의 기준이 입증 책임 기준과 다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송각하 요청에서의 적절한 분석은 소장의 첫째, 둘째, 일곱째 소인이 외견상 일리 있는 사기적 허위진술, 부주의한

허위진술, 형평상 사기에 관한 청구권을 기술하고 있음을 보인다는 것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이 청구권들에 대한 소송각하요청을 거절한다.

B. 소장은 외견상 일리가 있는 계약 위반 청구권을 기술한다.

네 번째 소인은 피고들이 성을 제외한 이름만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으므로 피고들이 ‘모유수유 안내’에 Sahoury의 성과 이름을 이용했을 때 면책 허가 서류의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실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는 외견상 일리가 있는 계약 위반 청구권을 기술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서명한 면책 허가 서류가 Sahoury와 A.S.의 이름과 녹화물 등의 사용을 허락하므로 자신들의 행동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적으로 계약 위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진술한다.

면책 허가 서류는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이름”이 성과 이름을 동시에 지칭한다고 정의하지 않는다. 이 계약 위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약서상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지만 이는 소장 기술의 분석 기준인 “외견상 일리 있는 계약 위반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가”와는 초점을 달리한다. 소장에서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소장은 원고가 손해배상 받을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C. 소장은 외견상 일리가 있는 과실과 그 과실에 의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을 기술하고 있다.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소인은 피고들에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원고가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기술한다. 과실은 불합리한 위협과 해악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말한다. 과실로 인한 소권은 손해를

입힌 주의 의무 위반이 원인이다. 과실로 인한 청구권을 가지려면 원고는 네 가지 요소를 입증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행동은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그 위반이 원고의 손해의 주원인이었다. 이와 독립적으로 과실에 의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지려면 (4) 원고는 피고의 과실 행위가 목전의 신체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위해를 느끼게 하였고, 그 신체 상해의 수준이 육체적 상해, 질병을 야기하는 정신적 고통 정도여야 한다.

소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충분히 주장하고 있다: (1) 피고들은 모유수유 비디오를 촬영, 편집, 제작, 배포함에 있어 Sahoury와 A.S.에 대해 합리적이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피고들은 Sahoury의 이름이 담긴 비디오를 YouTube에 게시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보안에 신경쓰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들은 부주의한 행동이 Sahoury와 A.S.에게 피해를 입힐 것임을 알았어야 한다; 그리고 (4) 피고들의 부주의는 Sahoury와 A.S.가 음란영상물과 연계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다. Sahoury는 자신이 자신과 딸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집착하게 되었고 수모, 심각한 정신적 중압감, 불안감, 공황 발작, 울음과 떨림, 분노감, 슬픔을 겪어왔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모유수유 안내’ 동영상상을 제작·배포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들이 Parents® 웹사이트에 게시한 다른 비디오가 제삼자가 내려 받지 못하도록 보호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다른 모유수유 비디오를 포함한 여타 교육용 비디오에 선 성과 이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들이 Sahoury의 모유수유를 촬영한 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제작자, 촬영

기사와 모유수유 전문가와 촬영된 두 번째 모유수유 비디오에 참여한 여성의 동영상 화면에는 성과 이름 모두가 표기되지 않았다. 또, Sahoury는 음란영상물이 발견된 후에 Criso가 제작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Sahoury의 성과 이름이 모두 사용되었는지를 물었고, 그 제작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으며,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자신들에게 제삼자의 행위를 제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는 법적으로 본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잘못 읽고 있다. 소장은 피고들이 피해를 끼치는 음란영상물을 만든 제삼자들의 행위로부터 Sahoury와 A.S.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모유수유 안내’ 비디오의 부주의한 노출로부터 Sahoury와 A.S.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전문가로서 사례금을 받거나 선전효과를 얻지 않았던 원고가 자신의 일상적인 두려움을 떨치고 그녀의 갓난 아기가 자신과 함께 촬영되는 것을 허락해 모유수유 기술을 시범해 보였다는 사실들에서 자연스레 기인한다.

둘째로, 피고들에 의해 인용된 판례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의무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당사자들의 관계, 주의를 다할 기회나 능력, 주장된 해결방책이 공공에 주는 이익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내고 분석,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이 분석은 필연적으로 사실 특정적이고 원칙에 입각한다.

이 다수 요소들의 사실 특정적 비교평가는 증거 개시 절차를 요한다. 하지만, Twombly 판례로 소장 기술의 기준이 조금 높아진 이후에도 법원들은 원고가 반증이 없으면 승소가 확정될 사건의 모든 요건을 확증할 필요는 없고, 증거 개시 절차가 필요 요건의 증거를 밝힐 것이란 합리적 전망을 보일만한 주장을 내세우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해 왔다.

본소에서 Sahoury는 외견상 일리가 있는 과실과 그 과실에 의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을 보일만한 사실을 주장했고, 따라서 이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소인에 대한 피고들의 소송각하요청을 거절한다.

D. 소장 기술 시기에서 경제적 손실 원칙은 불법행위나 사기에 대한 권리 주장을 막지 못한다.

피고들은 비록 사기와 과실에 대한 권리 주장(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소인들)이 적절하더라도, 경제적 손실 원칙이 이들의 권리주장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손실 원칙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의 권리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손실은 불법행위나 사기에 대한 청구권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계약 위반과 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권리가 같은 기본 사실에 의거할 때, 원고는 계약 위반 청구권만 주장할 수 있고 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피고들의 주장은 Fed.R.Civ.P. § 8(d)(2)이 원고가 소장에서 대체적이거나 상호 모순된 권리주장을 하는 것을 허락함을 망각한 것이다. 경제적 손실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될 시, 이는 원고가 계약 위반과 같은 기본 사실로부터 기인하는 불법행위나 사기에 대한 권리 주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할 뿐이고, 원고가 불법행위나 사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적절한 판례법은 경제적 손실 원칙이 본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을 강하게 나타낸다. 양 당사자가 인용한 거의 모든 판례가 물품 판매나 저당(담보) 계약에서 기인한다. 또, 피고들의 주장은 법원이 면책 허가 계약이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서라고 결정할 것임을 가정할 때만 유효하지만, 본 법원은 이 시점에서 계약의 유효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을 것이

다.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주장에 유효한 반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그 권리주장이 소장에 충분히 기술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E. 소장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권리주장은 기술하지 못했다.

다섯 번째 소인은 피고들이 Sahoury와 A.S.의 이름을 모유수유 비디오에 “거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해 프라이버시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고 Sahoury와 A.S.의 이름을 피고들의 이익을 위해 부당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는 New Jersey 법이 개인의 이름, 초상의 부당 사용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을 판례법에서의 불법행위 소송으로서 인정한다는데 동의한다. 부당사용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보여야 한다: (1) 피고가 원고의 이름이나 초상을 이용하였고; (2) 그 이용은 상업적 혹은 거래 목적이거나 피고의 회사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소에서 피고가 Sahoury와 A.S.의 이름과 초상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양당사자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소장은 그 이용이 거래목적이었다는 점은 주장하지 않았다. New Jersey 법에 의하면 피고는 초상의 사용이 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을 때만, 즉, 피고가 뉴스나 정보 배포목적이 아닌 원고의 초상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을 때만 부당한 사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Hart v. Elec. Arts, Inc.(상업적 목적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피고인들의 발행물이 원고의 초상을 이용함에 있어 원고의 이름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상업적 기획에 이용했는가’이다) 불법행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초상 이용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목적 하나 만으로는 “상업적 목적”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한

다. 따라서 이용은 공공의 이익이나 뉴스로서의 가치, 혹은 역사적 가치가 없이 주로 거래목적이어야 한다.

본 소에서 Sahoury는 피고들이 ‘모유수유 안내’ 영상을 YouTube에 게시함으로써 “상업적 목적”을 지님을 입증했다고 보았다. 원고는 큰 회사들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해 YouTube에 비디오를 게시하고, 게시된 비디오는 회사 웹사이트를 선전하고자 회사 로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웹사이트에서의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주장들은 피고들이 비디오를 YouTube에 게시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만 암시한다. Sahoury이 주장한 사실들을 통해 어떤 회사들이 무슨 이유로 교육용 비디오 내용을 게시하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Sahoury와 A.S.의 이름과 초상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소장은 비디오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아무런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 사실, 소장은 비디오가 “교육용 혹은 시범용”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Castro 판례에서 다수의 응급실 환자들은 동의서에 사인을 한 뒤 비디오 촬영을 하였고, 후에 초상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 환자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을 리얼리티 TV쇼 촬영 스태프들이 아닌 병원 직원으로 소개했다고 주장한다. Castro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이 원고들의 초상과 이름을 상업적 수익과 이익을 위해 무단 사용하였다”는 법률적 결론만을 주장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Castro 법원은 원고의 소장이 비디오 영상이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 Castro 판례는 불법행위법제술 제2판(Restatement Second of Torts)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다.

“비디오 영상의 TV 방영이 촬영된 사람에게 자신의

초상권 무단 사용에 관한 소 제기 권리를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름과 초상 모두 사적인 것이 아니고, 대중의 관찰에 의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이 대중에 공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름이나 초상을 통해 상업적 혹은 다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피고가 신문사 같이 출판, 방송 등으로 수익을 취하거나 수익을 취하려 하는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의 이름, 초상 게시를 상업적 사용이라 단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비록 신문사가 자선사업단체는 아니지만, 그 사실이 신문사가 이름, 초상을 게시할 때마다 프라이버시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Castro 판례는 해당 영상이 연예·오락관련 프로그램에서만 방영되었는지, 혹은 중요한 사회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고들이 초상들이 상업적 혹은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이를 떼면 “비디오 영상이 선전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astro 법원은 청구권이 받아들여질 만한 소장 기술을 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비슷하게, 피고가 주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없이 Sahoury와 A.S.의 이름과 초상이 방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단 사용의 소를 제기하기 불충분하다. Sahoury와 A.S.의 초상이 광고나 선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소장에 제기되지 않았다. 피고들이 “교육용 혹은 시범용의” ‘모유수유 안내’ 비디오를 제작 배급함에 있어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소를 제기하는데 있어 “상업적 목적”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소장은 피고들이 원고의 이름과 초상을 “거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법률적 결말만을 제기하고 있고, 따라서 무단 사용의 소제기는 각하되어

야 한다.

V. 결론

피고들의 소송각하요청은 상기된 이유를 바탕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소인에 대해 받아들여졌고 다섯 번째 소인에 대해서는 각하되었다. 이에 상응한 법원의 명령이 따를 것이다.

[미국판례 3]

게을러서 직장을 잃었다는 표현은

**경멸적 내용을 담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없이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피고의 “너무 게으르다”는 일반적인 진술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은 소송의 현 단계에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Celle 판례에서 인용된 New York 항소법원의 테스트를 적용할 때, 피고의 기술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출판 정황을 살펴볼 때 독자들에게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징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K.S. Liu의 진술의 최소한 일부분은 의견이 아닌 사실로 읽혀질 수 있다고 판결한다.

나. “New York 법에 의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원고는 반드시 금전적 가치의 손실로 이루어진 특별한 손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옳다. 하지만, 진술이 그 자체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엔, 원고는 특별한 손해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 New York 법에 의하면 글이 증오, 경멸 또는 혐오에 원고를 노출하는 경향이 있거나, 공동체 안의 상당한 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원고에 대한 불미스러운 의견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 글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다. 이는 비록 그 글이 원고에게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진 않거나 또는 원고의 사무, 직업 수행, 거래 방식에 관해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소송의 현 단계에서 피고의 진술이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원고: Sang Lan

피고: AOL Time Warner, Inc. 등

사건번호: No. 11 Civ. 2870(LBS)(JCF)

판결선고: 2012. 5. 9.

Sand, J. 판사 :

원고 Sang Lan과 잔류 피고 K.S. Liu, Gina Liu, Hugh Mo는 2011년 11월 21일 발효된 치안 판사 James C. Francis의 보고와 권유(Report and Recommendation; 이하 「판결서」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판결서는 (1) 원고의 소장 정정신청을 허가하고, (2) 피고들의 사물관할권 부재로 인한 소송각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3) 피고들의 소장 기술 부족에 의한 소송각하청구를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하고, (4) 피고의 원고와 원고의 전(前) 변호사 Ming Hai에 대한 제재 요구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판결서와 당사자들의 판결서에 대한 이의를 검토 한 후, 판결서를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한다.

I. 배경

당사자들이 사건의 사실 관계와 소송 절차를 잘 알고 있다고 간주하고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판결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판결서가 나온 이후로, 당사자들은 Fed.R.Civ.P. § 11에 의거한 피고의 Ming Hai에 대한 제재 요구의 기각에 동의해왔지만 원고에 대한 제재 요구의 기각은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Ming Hai의 책임 유무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2011년 11월 14일 확정된 본

법원의 기록을 재강조한다: Ming Hai가 더 이상 원고의 변호사가 아닌 이상, Ming Hai는 원고를 대변해 문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고 따라서 Ming Hai의 판결서에 대한 이의는 고려하지 않겠다.

II. 검토의 기준

치안 판사의 판결서를 검토하는 지방법원은 판결서 전부 혹은 일부를 인용, 기각, 변경할 수 있다. 지방 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판결서의 부분은 판결서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이 분석하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만 검토한다.

III. 논의

A. 소장 정정신청

세 번째 정정된 소장이 불성실, 부당한 지연, 시간 지체 의도 등으로 제출되진 않았다는 Francis 판사의 판결에 동의한다.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피고들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란 Francis 판사의 판결에도 동의한다. 또한, 피고들이 이 쟁점에 대한 Francis 판사의 판결에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Francis 판사의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소장 정정신청을 허가한다.

B. 사물관할권

원고가 본 안 소송에 승소한다고 가정할 때, (1) 손해 보상액이 \$75,000를 넘고, (2) 원고의 Winston Sie.에 대한 소가 기각됨으로 인해 완벽한 다양성이 이루어졌다는 Francis 판사의 판결에 동의한다. 이 결정 역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판결을 인용한다. 피고들의 사물관할권 부재로 인한 소송각하

청구를 기각한다.

C. 소장 청구권 기술 부족

피고들은 아홉 번째, 열 번째, 열세 번째 소인에 대한 Francis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각각을 순서대로 논하겠다.

i. 아홉 번째 소인: 수탁자 의무 위반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의 초상을 허가 없이 사용하여 수탁자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주장과 중복되므로 수탁자 의무 위반 청구권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청구권이 같은 사실 관계에 기인할 때, 각각의 다른 손해가 주장되지 않는 이상, 둘은 중복되는 주장이다. 따라서, 쟁점은 ‘원고의 수탁자 의무 위반 주장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주장이 같은 사실관계와 손해에 기인하는가’이다. 본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아홉 번째와 열세 번째 소인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영상, 이름, 초상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프라이버시권 침해 주장인 열세 번째 소인이 좀 더 구체적이고 허가 되지 않은 원고의 목소리 사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양 주장의 주요 취지는 크게 같다. 따라서 피고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영상, 이름, 초상을 사용했다는 원고의 수탁자 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하며 이에 대한 재소를 허용한다.

ii. 열 번째 소인: 명예훼손

K.S. Liu는 자신이 2011년 1월에 중국 웹사이트 Sinovision에서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이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K.S. Liu는 “Sang Lan은 매우 게을리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 나는 나와 중국

정부와의 연줄을 이용해 그녀가 Star TV에서 직장을 얻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일도 하기 싫어해서 그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다.

New York 법에 의하면 원고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1) 원고에 관련된 사실에 대한 서면의 명예훼손 진술; (2) 그 서면의 제 삼자에 대한 출판; (3) 명예 훼손된 사람에 대한 부주의 혹은 현실적 악의 등의 잘못; (4) 명예훼손 진술의 거짓; 그리고 (5) 특별한 손해, 혹은 의견상의 명예훼손 그 자체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

K.S. Liu는 첫째로, 자신의 진술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진술이었으며, 둘째로, 원고가 특별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본 법원은 K.S. Liu의 원고에 대한 “게을러서 Star TV에서의 직장을 잃었다”는 진술이 충분히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K.S. Liu의 “너무 게으르다”는 일반적인 진술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은 소송의 현 단계에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Celle 판례에서 인용된 New York 항소법원의 테스트를 적용할 때, K.S. Liu의 진술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출판 정황을 살펴볼 때 독자들에게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징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K.S. Liu의 진술의 최소한 일부분은 의견이 아닌 사실로 읽혀질 수 있다고 판결한다.

반면, “New York 법에 의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원고는 반드시 금전적 가치의 손실로 이루어진 특별한 손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옳다. 하지만, 진술이 그 자체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엔, 원고는 특별한 손해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

특정 진술이 명예훼손인지는 법적 문제로 법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New York 법에 의하면 글이 중요, 경멸 또는 혐오에 원고를 노출하는 경향이 있거나, 공동체 안 상당한 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원고에 대한 불미스러운 의견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 글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다. 이는 비록 그 글이 원고에게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진 않거나 또는 원고의 사무, 직업 수행, 거래 방식에 관해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소송의 현 단계에서, K.S. Liu의 진술이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K.S. Liu의 진술은 원고를 어떤 직업이나 생업의 수행에도 필요한 필수적인 특성(근면, 헌신, 혹은 부지런함)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진술은 원고의 전문가로서의 지위에 분명 해를 입힐 것이다.

또한 또 다른 K.S. Liu의 진술 - “Sang Lan은 게으르다. 그녀는 혼자 소변을 보도록 훈련되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따라서 내가 소변 줄을 이용해 그녀가 소변을 보도록 도와야만 했다.” - 역시 그 자체로서 명예훼손이다. 이 진술은 원고가 마비 증상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배뇨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순전히 그녀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암시한다. 이 진술이 중요, 경멸 또는 혐오에 원고를 노출하는 경향이 있거나, 공동체 안의 상당 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원고에 대한 불미스러운 평가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비슷하게, K.S. Liu와 Gina Liu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은 외견상 일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Hugh Mo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을 각하한 판결서를 인용한다. 열 번째 소인의 다른 부분, 즉 K.S. Liu와 Gina Liu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피고의 소송각하청구는 기각한다.

iii. 열세 번째 소인: 프라이버시 침해

원고가 New York Civil Rights Law §§ 50, 51에 의거해 반증이 없으면 승소가 확정될 프라이버시 침해 청구권 요소를 입증하였다는 Francis 판사의 결정을 인용한다. 원고가 CD 표지에서의 초상 사용과 CD에서의 목소리 사용이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피고들의 이의 제기는 의미가 없다. 원고는 CD의 목적이 피고들의 회사 광고였음을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 경우 원고는 소제기 필요 요건을 충족시켰다.

피고들의 열세 번째 소인에 대한 소송각하신청을 기각한다.

D. 제재 요청

피고들은 원고와 원고의 전 변호사 Ming Hai에 대한 제재를 요청해 왔다. 피고들은 그 제재의 근거로; 무분별한 청구권 제기, 소장 정정신청이 Fed.R.Civ.P. § 11를 위반한 것, 원고의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일로 가득했다는 것, Hugh Mo를 변호인 자리에서 몰러나게 강요하기 위해서 그를 피고인으로서 추가하였다는 것 등을 든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Ming Hai에 대한 제재 요청은 이미 해결되었다. 문제는 ‘원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가’이다.

방법원은 제재가 필요한가를 결정하는데 대해 일반적으로 많은 재량을 갖는다. Francis 판사가 명시한 바와 같이 유일하게 가능한 제재 근거는 원고가 제기한 일부 청구권이 명백히 무분별했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합리성의 기준에서, 원고의 청구권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고, 현존하는 법을 연장, 수정, 취소할 타당한 주장이 없다면, 원고의 주장이 무분별하며, 이에 따라 Fed.R.Civ.P. § 11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다. 미

약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만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이 원고의 소장이 무분별한 주장이라 비난할 수 있음은 사실이나,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제재 요청을 기각한다.

IV. 결론

상기된 이유를 바탕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재 요청을 기각하고, 아홉 번째 소인에 대한 피고의 소송 각하요청을 받아들인다(원고는 재소가 가능하다). 열 번째 소인 중 Hugh Mo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피고의 소송각하요청을 인용하고, K.S. Liu와 Gina Liu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피고의 소송각하요청은 기각한다. Francis 판사의 판결서를 다른 모든 면에서 인용한다.

■ 출처 : 『MEDIA LAW REPORTER』

미국판례 1 : Vol. 40/P.2057~2068

미국판례 2 : Vol. 40/P.2182~2191

미국판례 3 : Vol. 40/P.2109~2112

■ 번역 : 이해성

(University of California Law School)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영국사례 1]

**지나치게 상세한 자살 방법 보도는
보도윤리강령 위반이다.**

신청인 : A woman

매체명 : Wiltshire Gazette & Herald

불만내용

신청인은 2012년 9월 6일자 〈Wiltshire Gazette & Herald〉에 실린 기사가 자살의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 보도윤리강령 제5조(슬픔과 충격에 대한 침해)를 위반하였다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 불만 신청은 인용되었다.

문제의 기사는 자살한 남성의 사인규명 공판에 관한 보도였다. 자살에 사용된 가스(gas)의 종류, 흡입이 이루어진 방식과 발견 당시 고인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실렸다. 신청인은 기사내용이 노골적이고 전문적이며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고통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언론사는 고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족의 바람대로 신중함을 기하고자 노력했고, 그들의 요청으로 위 죽음 당시에는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세 부적인 보도내용들은 사인규명 공판을 통해 공개되었고, 이들을 누락할 경우 검시관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보도윤리강령 제5조 제2항은 언론 보도가 자살 방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06년에 신설되었다.

사인규명은 일반적으로 사망 방법에 관한 높은 수준의 정보를 포함한다. 자살 사건의 경우 언론은 사인규명에 대해 보도할 권리가 있지만 보도윤리강령 제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보의 수위를 제한하는 주의를 마땅히 기울여야 한다.

기사는 한 남성의 목숨을 잃게 만든 가스의 명칭, 그것을 얻게된 방법과 흡입 방식에 관해 보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위원회는 해당 정보의 공개 수위가 지나쳤다고 보아 신청인의 불만신청을 인용한다.

[영국사례 2]

**기사 헤드라인에 일인칭을 사용한 것은
신중하지 않은 보도태도다.**

신청인 : Nick Crossley

언론사 : Halifax Courier

불만내용

신청인은 John Pickering & Partners에 소속된 변호사(Solicitor)를 통해, 2012년 3월 17일자 〈Halifax Courier〉에 실린 “거물 Crossley: 나는 죽어가고 있

다” 제하의 기사가 보도윤리강령 제1조(정확성) 위반으로 부정확하며, 제5조(슬픔 및 충격에의 침해)를 위반하여 신중하지 못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보도윤리강령 제5조에 관한 불만 신청은 인용되었다.

신청인은 악성중피종(malignant mesothelioma)¹⁾ 환자이다. 기사는 신청인이 이전의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고용주가 신청인이 근무 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청인은 자신이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암시한 기사의 헤드라인이 부정확하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비록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 중피종에 걸린 채로 남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기사는 신청인이 하지 않은 말을 직접 말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신청인은 위와 같은 표현을 언론사의 기자에게나 (그에게는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소송 과정에서도 결코 - 혹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표현도 -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도로 인해 신청인과 그의 가족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으며, 그의 고용인들은 직장을 옮겨갔다고 밝혔다.

언론사는 신청인에게 고통을 불러온 점에 대하여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관련 소송의 요약으로써 신청인이 “그의 병환이 말기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 진단으로 인해 본인과 그의 가족이 비탄에 빠져있다는 정보 -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를 통해 알려진 - 를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헤드라인에는 인용부호(“ ”)를 넣지 않았고 이는 신청인의 상태를 기술한 것으로써 독자들에게 정확히 이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가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신중하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미

공개된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사임을 강조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언론은 보도윤리강령 제5조에 따라 슬픔이나 충격이 수반되는 사건에 관해, 연민과 신중함을 갖추어 취재에 임하고, 세심한 보도를 해야한다. 다만, 사인구명과 같은 법적인 절차에 관해 보도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매우 까다로우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언론사는 신청인이 걸린 병의 경과를 포함하여 그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세부내용 - 이미 대중에 공개되었다 - 에 대해 보도할 권리가 있다. 언론사측이 신청인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지나 신청인이 자신을 “죽어가고 있다”고 묘사했다는 사실에 관해 증명하지는 못했다.

기사의 헤드라인에 일인칭을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개인의 관점을 요약하는 적절한 기법이 되지만 이 사건의 소재는 몹시 개인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위원회는 신청인이 걸린 병의 경과를 보도하는 수단으로써 기사의 헤드라인에 일인칭을 사용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제5조에 관한 불만 신청을 인용한다.

또한 신청인은 보도윤리강령 제1조(정확성) - 언론은 부정확하거나, 독자를 호도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중대한 잘못(부정확성, 호도성 진술 혹은 왜곡)이 인정되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 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사의 헤드라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헤드라인의 정확성에 대한 불만을 살핌에

1) 석면가루가 등 폐·흉막 등에 쌓여 발병하는 종양으로, 석면 노출 후 20년 이상 경과 후 발병하여 1~2년 이내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있어서, 그것의 문맥을 고려하였다. 보도는 신청인의 소송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신청인이 언론사 측과 인터뷰한 것이라고 암시하지도 않았다. 위원회는 독자들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보며, 여기에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얻어진 신청인의 병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보도 내용으로 보아 독자들은 사실에 기반하여 위 기사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제1조 위반은 없다.

[영국사례 3]

정정보도는 비중있게(due prominence)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인 : Honest Reporting

언론사 : The Guardian

불만내용

신청인은 Asserson Law Offices를 통해, 2012년 4월 22일자 <The Guardian>의 정정·해명란에 실린 기사가 보도윤리강령 제1조를 위반했다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언론사는 보도윤리강령 제1조를 위반하여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보도하지 말아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기사는 예루살렘에서 전차에 탄 승객들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수도라고 설명하는 캡션(사진·삽화에 붙인 설명)을 달았다. 이어서 후속 기사(첫 번째 정정보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수도로 잘못 언급된 도시”라는 캡션과 함께 “<The Guardian>의 지침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며 텔아비브’라고 서술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신청인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주장은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텔아비브를 수도라고 칭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위원회는 이 기사에 보도윤리강령의 위반이 없다고 보았지만, 신청인이 제기한 수많은 추가사안들에 관련된 언론사의 답변을 요청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신청인은 이스라엘 중앙 정부의 세 부처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 가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1980년에 이스라엘의 국회(Knesset)가 통과시킨 기본법(Basic Law)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고 명명하고 있음을 포함해 많은 논점들을 제시했다.

신청인은 이스라엘 중앙 정부의 세 부처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 가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1980년에 이스라엘의 국회(Knesset)가 통과시킨 기본법(Basic Law)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고 명명하고 있음을 포함해 많은 논점들을 제시했다.

반면, 언론사는 예루살렘의 지위 변화를 규탄하고, 회원국들에게 그곳에 대한 외교적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기본법 및 그 통과에 대한 반응을 언급했다. 이스라엘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텔아비브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제사회는 텔아비브를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간주하”는 참고자료를 신뢰한 것이고, “UN과 국제법은 1950년 이전부터 수도였던 텔아비브를 계속하여 수도라고 여겨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텔아비브를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봄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두 번째 정정보도를 게재했는데, 즉 예루살렘의 지위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에 관한 몇 가지의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텔아비브 - 나라의 경제·외교적 중심지 - 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기술한 잘못을 인정했다. 또한 해당 보도에서 언론사의 지침이 수정되었다고도 밝혔다.

신청인은 두 번째 정정보도가 예루살렘의 법적 지위를 부적절하게 조명하고 있으며, 이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청인은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외교적 중심지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정

정보도 역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정정보도가 “비중(due prominence)”없이 보도되었고 위사안에 관해 위원회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

충분한 해결조치가 취해졌다.

평결

보도윤리강령 제1조(정확성)에 따르면, 언론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중대한 부정확하거나 호도적인 표현에 대해 즉각적이고 비중있게(due prominence) 정정해야 한다.

본 사건은 여러 이유에서 매우 이례적인 불만신청에 속하는데, 특히 불만이 정정보도 자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예루살렘의 지위를 둘러싼 매우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와 더불어 텔아비브에 대부분의 외국 대사관이 위치해있다는 – 논쟁이 없는 – 사실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애초에 텔아비브를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기술한 언론사의 보도가 보도윤리강령과 관련해 문제점이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신청인 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언론사가 신뢰해 온 증빙자료에도 불구하고,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명백한 표현은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보도윤리강령 제1조의 위반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언론사는 보도윤리강령 제1조가 요구하는 “즉각적이고 비중있게(due prominence)” 정정보도를 게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도한 두 번째 정정보도에서는 텔아비브를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잘못 표현했음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정정보도가, 신청인이 무관한 쟁점이라고 여겨온 예루살렘의 지위에 관해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텔아비브가 예루살렘

의 경제·외교적 중심지라고 표현한 언론사의 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불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언론사는 보도윤리강령의 준수를 다한 채로 독자들에게 가공되지 않은 내용을 설명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보며, 게재된 두 번째 정정보도는 원문 기사의 부정확성에 대해 충분히 고심한 것으로 보여졌다. 나아가 정정보도는 비중있게(due prominence) 기사화되었으며,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한 원문기사가 게재된 동일한 위치인 정정·해명란에 실렸음을 주목하는 바이다.

보도윤리강령 하에서, 더 이상의 문제점은 없다.

[호주사례]

보도가 부정확한 경우 언론사는 기사 삭제 뿐만 아니라 비중있게 정정보도하여야 한다.

신청인 : Andrew Williams

언론사 : The Courier Mail

개요

APC는 2012년 3월 7일, 브리즈번(Brisbane)의 〈The Courier Mail〉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찰, 폭행 혐의로 사임” 제하의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을 검토하였다. 문제의 기사는 서퍼스 파라다이스(Surfer's Paradise)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하면서 한 고위 경찰이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적어도 다른 2개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그들 중 하나는 The Courier Mail이 출처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신청인의 주장

서퍼스 파라다이스 경찰서 측인 신청인은 문제의

고위 경찰은 다른 경찰서 소속이며 사임의 원인이 된 사건은 신청인 측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문제의 기사는 부정확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비록 위 기사가 몇 시간 후에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정정보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웹사이트’ 중 한 곳에 게재된 정정보도를 대조하면서, “이전 기사는 링크가 잘못 연결되었는데, 그것은 최근에 서퍼스 파라다이스에서 한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었다. 두 개의 사건은 무관하며, 해당 웹 사이트는 실수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언론사의 주장

APC의 질의에 대해, 언론사는 최초의 보도가 부정확하였음을 시인하였으므로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통상의 관례를 따랐어야 했다. 언론사는 사과를 표명했고, 이 사안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왔다.

결정 이유

APC는 언론사가 최초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퀸즈랜드(Queensland) 경찰의 보도자료에도 서퍼스 파라다이스 경찰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보도된 남부지역 출신의 고위 경찰의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단지 기사를 삭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중있게(due prominence) 정정보도했어야 했다. 따라서 보도의 부정확성 및 정정보도 불이행에 관한 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인다.

■ 번역 : 임미숙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언론법제관련문헌

- 강신후 (2012, 12, 1). 언어와 뉴스보도.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고영철 (2012). 한·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의 보도방식 비교.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3호, 37-78.
- 권만우 (2012, 10, 13). 한국 언론학의 융복합 현상 파악과 진단.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권혁남 (2012). 2012 국회의원 총선에서 나타난 미디어 이용, 정치 냉소주의, 투표 참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0호, 28-51.
- 김경모 (2012, 10, 13). 온라인 뉴스 확산과 여론형성 : '박정신 블로그 논란' 이슈 사례분석.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김경환 (2012, 11, 1). 뉴스 전쟁의 글로벌 현장 : 글로벌 보도전문 채널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언론학회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주최 '글로벌 글로벌 보도전문 채널의 경쟁 전략과 국제뉴스의 미래' 세미나 발제문.
- 김국진 (2012, 12, 4). 미래가 있는 미디어 정책방향. 미디어미래연구소주최 '2012 미디어산업포럼 - 차기정부 방송통신정책포럼 6' 발제문.
- 김병선 (2012, 12, 20). 소셜 미디어의 진화적 계보와 생태학적 환경. 한국언론학회 철학과 사상분과주최 '2012년 송년 세미나' 발제문.
- 김보라미 (2012, 12, 20). 국내 망중립성 논의 현황과 쟁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12월 특별세미나' 발제문.
- 김상호 (2012, 12, 20). 소셜 미디어를 통한 발화의 철학적 성격. 한국언론학회 철학과 사상분과주최 '2012년 송년 세미나' 발제문.
- 김수미 (2012, 12, 14). 무료신문 뉴스 생산 과정의 특성 : <메트로>와 <더 데일리 포커스>의 사례 연구. 대구경북언론학회,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주최 '2012 제4회 영남지역 대학원생 컨퍼런스 - 영남 언론학의 생태계를 찾아서' 발제문.
- 김영희 (2012, 10, 13). 한국전쟁기 이승만정부의 언론정책과 언론의 대응.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김지영 (2012, 12, 14). 영남지역 언론사 사회자본 분석. 대구경북언론학회,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주최 '2012 제4회 영남지역 대학원생 컨

퍼린스 - 영남 언론학의 생태계를 찾아서' 발제문.

- 김춘식 · 양승찬 · 이강형 · 황용석 (2012. 12. 1). 헤드라인 및 본문의 지배적 내용 분석.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김춘식 · 이강형 (2012. 12. 1). 취재원 및 인용구 분석.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문재완 (2012. 11. 9). 프라이버시 보호의 이상과 현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2012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제문.
- 박영흠 · 김균 (2012). 포스트저널리즘 시대의 이해를 위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3호, 141-169.
- 박태순 (2012. 11. 16). 콘텐츠산업 법제도 개편 방안 - 심의제도 개편 및 통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주최 '콘텐츠 미래전략 제11차 정기포럼' 발제문.
- 송경재 (2012. 12. 8).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과 리터러시 향상 방안. 한국미디어교육학회주최 '제16회 미디어교육전국대회 - 스마트미디어 시대, 새로운 미디어교육 방향 모색' 발제문.
- 심 훈 (2012. 12. 1). 다문화사회와 언론의 역할.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안동근 (2012. 12. 8). 소셜미디어 시대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안종묵 (2012). 인터넷 미디어의 유형과 뉴스 속성에 따른 뉴스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3호, 201-230.
- 양승찬 · 황용석 (2012. 12. 1). 여론조사 보도 분석.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양재규 (2012. 10). 법을 알고 기사쓰기 87 - 자율과 의무 사이 엠바고 효력은 여전히 방황 중. 『신문과 방송』, 통권 502호, 94-98.
- 양재규 (2012. 11). 법을 알고 기사쓰기 88 - 범죄 피해가 부모 탓? 명예훼손 부르는 위험한 보도. 『신문과 방송』, 통권 503호, 91-95.
- 양재규 (2012. 12). 법을 알고 기사쓰기 89 - 공인 실명보도 업무 연관성 있다면 필수. 『신문과 방송』, 통권 504호, 102-106.
- 양정애 (2012). 일반인들의 온라인 뉴스게시물 제 목붙이기와 내용구성.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5호, 114-140.
- 오창우 (2012). 미디어체계의 폐쇄성과 현실구성의 향상성.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5호, 216-243.

- 윤호진 (2012, 11, 1). 국제뉴스의 미래 그리고 미래의 국제뉴스. 한국언론학회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주최 ‘글로벌 글로벌 보도전문 채널의 경쟁 전략과 국제뉴스의 미래’ 세미나 발제문.
- 이기형 (2012, 12, 7). 정론, 쟁론, 풍자 그리고 정치 비평의 명암. 한국방송학회주최 ‘선거방송 긴급진단 세미나’ 발제문.
- 이만제 (2012, 11, 23).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역방송의 미래전략. 호남언론학회주최 ‘2012 가을철 세미나’ 발제문.
- 이승선 (2012). ‘지역신문 운영 등’의 입법취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3호, 355-389.
- 이승선 (2012, 11). 섬세하고 엄밀한 취재 없다면 차라리 보도하지 말아야 - 인권보호 등 성범죄 보도 개선방안. 『신문과 방송』, 통권 503호, 28-32.
- 이완수 (2012, 12, 7). 지상파 방송뉴스의 대선 보도 평가: 공정성, 균형성, 맥락성. 한국방송학회주최 ‘선거방송 긴급진단 세미나’ 발제문.
- 이완수 (2012, 12, 8). 지역신문 구조 연구: 부산일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이인호 (2012, 11, 9). 정보프라이버시권의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2012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제문.
- 이재진 (2012, 12). 정보전달자에서 사실검증자로 역할 변화 -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과 저널리즘이 주의해야 할 점. 『신문과 방송』, 통권 504호, 64-67.
- 이종혁 · 길우영 · 강성민 (2012, 10, 13). 뉴스가치(News value) 관련 개념에 대한 구조적 분석: 2차 요인분석(second-order factor analysis)를 통한 뉴스가치 모델 도출.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이진규 · 문재학 (2012, 11, 9). 방통융합 시대의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방안. 부산MBC, 울산MBC, MBC경남,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주최 ‘제10회 부산울산경남 언론학술상 연구과제 세미나’ 발제문.
- 임종수 (2012, 10, 13). 미디어화: 일상의 미디어에서 미디어의 일상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정경순 (2012, 12, 14). 사이버공간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마녀사냥 논란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언론학회,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주최 ‘2012 제4회 영남지역 대학원생 컨퍼런스 - 영남 언론학의 생태계를 찾아서’ 발제문.
- 정동우 · 황용석 (2012). 공정성 개념에 대한 신문기자들의 인식 차이 연구. 『언론과 사회』, 제20권 제3호, 120-158.
- 정성은 (2012, 11, 2). SNS공간에서 실명성과 조직

- 소속 여부가 의사표현 위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11월 특별 세미나' 발제문.
- 정용국 (2012, 11). 성범죄를 '이야깃거리'로 취급하는 언론, 시나브로 신뢰 잃는다 - 성범죄 보도에서 점검해볼 세 가지 이슈. 『신문과 방송』, 통권 503호, 24-27.
 - 정의철 (2012, 12, 8). 다문화사회 통합과 방송의 역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정의철 · 김민경 (2012, 12, 1).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뉴스 연구.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정준희 (2012, 10, 13). 미디어 환경의 융복합화 조건에서 콘텐츠 산업 진흥의 원칙과 방향성: 콘텐츠 범주의 재정비와 제도적 고찰에 기초하여. 한국언론학회주최 '2012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조성호 (2012). 지상파 TV 뉴스와 보도 시청행태의 변화.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3호, 455-492.
 - 조재현 (2012, 11, 2). 인터넷실명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11월 특별세미나' 발제문.
 - 조향제 (2012, 12, 7). 새로운 방송 구도와 정치 문화의 변화. 한국방송학회주최 '선거방송 긴급 진단 세미나' 발제문.
 - 채영길 (2012, 12, 1). 해외 언론의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보도사례 II : 미국.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최영재 (2012, 12, 7). 대통령 선거와 방송뉴스의 지적 기능. 한국방송학회주최 '선거방송 긴급 진단 세미나' 발제문.
 - 최은희 (2012, 12, 1). 해외 언론의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보도사례 I : 독일.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한혜경 (2012, 11, 9). 지역 뉴스 프로그램 시청패턴에 관한 연구. 부산MBC, 울산MBC, MBC경남,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주최 '제10회 부산울산경남 언론학술상 연구과제 세미나' 발제문.
 - 홍성구 (2012, 12, 1). 다문화사회와 방송의 역할. 한국소통학회주최 '2012년 한국소통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제문.
 - 황유선 (2012).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트위터 정보 전파력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5호, 350-372.
 - Daniel Trottier (2012, 11, 8). 소셜미디어 감시 : 컨버전스, 위험과 불확실성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주최 '2012 가을 국제세미나 - 빅데이터, 도전과 미래' 발제문.